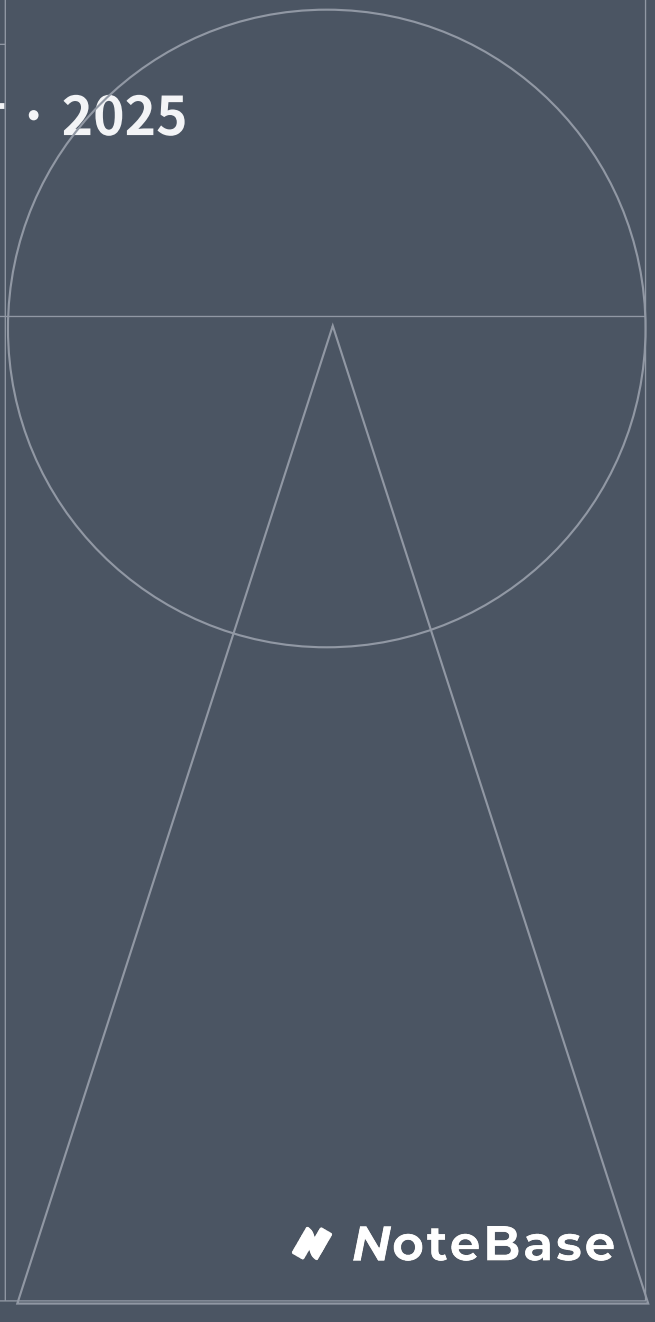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회계학 · 2025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회계학 · 2025

공무원/서울시/7급 · 회계학 · 2025

문 1. (주)서울은 20X1년 말 자산 ₩9,200,000, 부채 ₩3,700,000을 보고하였으며, 20X2년 말 시산표에 표시된 전체 자산과 부채는 <보기>와 같다. 20X2년 중 주주가 ₩1,000,000을 추가 출자하였고, 20X2년 당기순이익이 ₩500,000일 때, (주)서울의 20X2년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현금액은?

<보기>

• 매출채권	₩2,000,000	• 매입채무	₩500,000
• 건물	₩2,500,000	• 상품	₩700,000
• 차입금	₩1,500,000	• 미지급금	₩200,000
• 현금	?		

① ₩4,000,000

② ₩4,700,000

③ ₩5,200,000

④ ₩5,500,0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회계등식 '자산 = 부채 + 자본'과 자본의 변동(추가 출자·당기순이익)을 이용해 20X2년 말 시산표에서 빠진 항목인 현금을 역으로 구하는 문제다. 푸는 순서는 세 단계다. 첫째 기말 자본을 구하고, 둘째 회계등식으로 기말 총자산을 구하고, 셋째 이미 알려진 자산에서 빼서 현금을 구한다. 회계등식이란 기업의 모든 자산은 채권자 지분(부채)과 주주 지분(자본)의 합과 항상 같다는 등식이다.

NoteBase

조건 정리

20X1년 말(=20X2년 초): 자산 9,200,000원, 부채 3,700,000원 → 기초 자본 = 9,200,000 − 3,700,000 = 5,500,000원. 20X2년 중: 주주 추가 출자 1,000,000원, 당기순이익 500,000원. 20X2년 말 시산표(보기): 매출채권 2,000,000원, 건물 2,500,000원, 상품 700,000원, 현금 ?(자산) / 매입채무 500,000원, 차입금 1,500,000원, 미지급금 200,000원(부채). 주의: 차입금·매입채무·미지급금은 모두 부채이고, 20X1년 말 수치는 기초 자본 계산에만 쓴다(기말 총자산 자리에 그대로 넣지 않는다).

사용할 공식

배당 등 추가 정보가 없으므로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에 추가 출자와 당기순이익만 더한다. 기말자본 = 기초자본 + 추가출자 + 당기순이익 그렇게 구한 기말 자본과 보기의 부채 합계를 회계등식에 넣어 기말 총자산을 구하고, 거기서 이미 아는 자산을 빼면 빠진 현금이 나온다. 자산 = 부채 + 자본 현금 = 총자산 -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

계산 과정

1단계 기초 자본(20X1년 말 자본): 9,200,000 − 3,700,000 = 5,500,000원. 2단계 기말 자본(20X2년 말 자본): 5,500,000 + 1,000,000(추가 출자) + 500,000(당기순이익) = 7,000,000원. 3단계 기말 부채 합계: 매입채무 500,000 + 차입금 1,500,000 + 미지급금 200,000 = 2,200,000원. 4단계 기말 총자산: 부채 2,200,000 + 자본 7,000,000 = 9,200,000원. 5단계 현금 제외 자산: 매출채권 2,000,000 + 건물 2,500,000 + 상품 700,000 = 5,200,000원. 6단계 현금: 9,200,000 − 5,200,000 = 4,000,000원.

선지 판단

① 4,000,000원 → O. 기말 자본 7,000,000원과 부채 2,200,000원으로 총자산 9,200,000원을 구한 뒤, 현금 외 자산 5,200,000원을 빼면 4,000,000원이다. 정답.
② 4,700,000원 → X. 당기순이익이나 자산·부채 구분에서 한 단계를 어긋나게 처리할 때 나오는 함정값이다. 당기순이익 500,000원은 반드시 자본에 가산하고 미지급금 200,000원은 부채로 분류해야 한다.
③ 5,200,000원 → X. 이 값은 '현금을 제외한 자산 합계(매출채권+건물+상품)'일 뿐 현금이 아니다 → 올바른 처리: 총자산 9,200,000원에서 이 5,200,000원을 빼야 현금이 나온다.
④ 5,500,000원 → X. 이 값은 '기초 자본(20X1년 말 자본)'이다 → 올바른 처리: 추가 출자와 당기순이익을 반영하면 기말 자본은 7,000,000원이고 현금은 4,000,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자본 증감 누락: 당기순이익 500,000원이나 추가 출자 1,000,000원을 빼먹으면 기말 자본이 작아져 현금이 과소계산된다. 자산·부채 분류 혼동: 차입금·매입채무·미지급금은 부채인데 자산으로 넣으면 총자산이 부풀려진다. 묻는 값 착각: '현금 제외 자산 합계'(5,200,000원, ③)나 '기초 자본'(5,500,000원, ④)을 최종 답으로 적는 실수. 시점 혼동: 20X1년 말 수치 9,200,000원은 기초 자본 계산용일 뿐, 20X2년 말 총자산도 우연히 9,200,000원이 된 것은 결과일 뿐이므로 처음부터 그대로 옮겨 쓰면 안 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빠진 항목 역산' 문제는 순서를 고정해 푼다. 첫째 기초 자본 = 기초 자산 − 기초 부채. 둘째 기말 자본 = 기초 자본 + 추가 출자 + 당기순이익 − 배당. 셋째 회계등식 '자산 = 부채 + 자본'으로 기말 총자산. 넷째 총자산에서 이미 아는 자산을 빼서 빠진 자산을 구한다. 보기 항목을 자산/부채로 먼저 분류하고, 자료에 나온 '중간값'(현금 외 자산 합계, 기초 자본)이 선지에 그대로 들어 있으면 함정이니 끝까지 계산하고 고른다.

암기 포인트

자산 = 부채 + 자본. 기말 자본 = 기초 자본 + 추가 출자 + 당기순이익 − 배당. 차입금·매입채무·미지급금 = 부채, 매출채권·건물·상품·현금 = 자산. 이 문제: 기초 자본 5,500,000 → 기말 자본 7,000,000 → 기말 총자산 9,200,000 → 현금 = 9,200,000 − 5,200,000 = 4,000,000원.

NoteBase

문 2. (주)서울의 20X1년 1월 중 재고자산의 매입 및 판매 내역은 <보기>와 같다. 이동평균법을 적용할 경우, 20X1년 1월 말 기말재고자산 금액은?

<보기>

일자	내용	수량(개)	단위당 금액(₩)
1월 1일	기초재고	100	1,000
1월 7일	매 입	100	1,200
1월 15일	판 매	150	–
1월 22일	매 입	100	1,250
1월 28일	판 매	50	–

① ₩120,000

② ₩165,000

③ ₩175,000

④ ₩225,0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이동평균법(moving-average method)을 적용해 20X1년 1월 말 기말재고자산 금액을 구하는 문제이다. 이동평균법이란 매입이 일어날 때마다 그 시점까지의 재고 총원가를 총수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평균단가를 즉시 다시 계산하고, 판매(출고) 시에는 직전에 갱신된 평균단가를 적용하는 방법이다. 핵심은 평균단가를 '매입할 때만' 새로 잡고, 판매만 일어난 시점에는 평균단가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다.

조건 정리

- 주어진 값: 1월 1일 기초재고 100개(단위당 1,000원, 원가 100,000원), 1월 7일 매입 100개(단위당 1,200원, 원가 120,000원), 1월 15일 판매 150개, 1월 22일 매입 100개(단위당 1,250원, 원가 125,000원), 1월 28일 판매 50개.
- 구해야 할 값: 1월 말 기말재고자산 금액.
- 주의할 조건: 판매단가는 묻지 않으므로 무시한다. 평균단가는 매입 시점에만 갱신하고, 판매 시점에는 직전 평균단가를 그대로 사용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이동평균단가는 매입 직후마다 다음과 같이 갱신한다.
이동평균단가 = 직전 재고원가 + 이번 매입원가직전 재고수량 + 이번 매입수량
기말재고자산 금액은 다음과 같다.
기말재고 = 기말수량 × 최종 이동평균단가
이 공식을 쓰는 이유: 문제에서 '이동평균법'을 명시했으므로 매입(1/7, 1/22) 때마다 평균을 새로 잡고, 판매분은 그 직전 평균단가로 빼내야 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1월 1일 기초: 100개, 재고원가 100,000원, 평균단가 1,000원.
2. 1월 7일 매입(100개×1,200원=120,000원): 수량 100 + 100 = 200개, 원가 100,000 + 120,000 = 220,000원, 평균단가 220,000 ÷ 200 = 1,100원.
3. 1월 15일 판매 150개: 평균단가 갱신 없이 1,100원 유지. 남은 수량 200 − 150 = 50개, 재고원가 50 × 1,100 = 55,000원.
4. 1월 22일 매입(100개×1,250원=125,000원): 수량 50 + 100 = 150개, 원가 55,000 + 125,000 = 180,000원, 평균단가 180,000 ÷ 150 = 1,200원.
5. 1월 28일 판매 50개: 평균단가 1,200원 유지. 남은 수량 150 − 50 = 100개.
6. 기말재고자산 = 100 × 1,200 = 120,000원.

선지 판단

① 120,000원 → O. 최종 기말수량 100개에 최종 이동평균단가 1,200원을 곱한 120,000원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정답이다.
② 165,000원 → X. 이 값은 1/15 판매 150개의 원가 150 × 1,100 = 165,000원으로, 팔려 나간 원가의 일부일 뿐 남은 재고가 아니다. 무엇을 구하라는지 헷갈리면 빠지는 함정이다.
③ 175,000원 → X. 계산 결과 120,000원과 다르다. 1/15 판매를 빠뜨리거나 평균단가 갱신 시점을 잘못 잡아 수량과 단가를 잘못 짝지을 때 나오는 오답이다.
④ 225,000원 → X. 이 값은 기말재고가 아니라 '매출원가'이다. 1/15 판매 165,000원과 1/28 판매 50 × 1,200 = 60,000원을 더하면 225,000원으로, 팔린 것의 원가이지 남은 재고가 아니다. 가장 전형적인 함정이다.

계산 결과 기말재고는 120,000원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 매출원가(225,000원)와 기말재고(120,000원)를 혼동: 문제는 '기말재고자산 금액'을 물었다. 팔린 분의 원가를 합산하지 않도록 발문이 무엇을 구하라는지 먼저 확인한다.
- 판매 시점에 평균단가를 다시 계산하는 실수: 이동평균법에서 평균단가는 '매입할 때만' 갱신된다. 판매는 직전 평균단가로 출고하며 단가를 바꾸지 않는다.
- 총평균법과 혼동: 총평균법은 한 달 전체 매입을 한꺼번에 평균(345,000 ÷ 300 = 1,150원, 기말 115,000원)내지만, 이동평균법은 매입마다 평균을 갱신하므로 답이 다르다.
- 매입가를 평균 내지 않고 그대로 사용: 마지막 매입 단가 1,250원을 기말재고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기말 단가는 1,200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동평균법 문제는 '매입 줄에서만 평균단가 갱신 → 판매 줄에서는 직전 평균단가로 출고 → 마지막 매입 후 평균단가 × 기말수량' 순서로 표를 위에서 아래로 한 줄씩 처리한다. 먼저 (총입고 300개 − 총판매 200개)로 기말수량 100개를 구해 검산하고, 마지막으로 계산된 이동평균단가를 곱한다. 같은 자료라도 '선입선출법'이나 '총평균법'으로 물으면 답이 달라지므로 발문에서 어떤 방법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이동평균단가 = 직전 재고원가 + 매입원가직전 수량 + 매입수량 (매입 때만 갱신), 기말재고 = 기말수량 × 최종 이동평균단가. 이 문제: 1/7 후 1,100원 → 1/22 후 1,200원, 기말 100개 × 1,200원 = 120,000원.

NoteBase

문 3. (주)서울의 20X1년 결산수정사항은 <보기>와 같다. <보기>의 사항 모두에 대해 결산수정분개를 할 경우, 결산수정분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9월 초 6개월간 임대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현금 ₩60,000(월 임대료 ₩10,000)을 수취하면서 전액 선수임대료로 인식하였다.
• 10월 초 1년분 보험료 ₩12,000을 지급하면서 전액을 선급보험료로 자산처리하였다.
• 12월 초 1년분 창고 사용료 ₩60,000을 먼저 지급하면서 전액을 임차료로 비용처리하였다.

① 비용은 ₩50,000 증가한다.
② 부채 총액은 ₩40,000 감소한다.
③ 자산 총액은 ₩52,000 증가한다.
④ 당기순이익은 ₩92,000 증가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결산일(20X1년 12월 31일) 시점에 세 건의 거래를 발생주의에 맞게 바로잡는 결산수정분개를 하고, 그 분개들이 자산·부채·비용·당기순이익에 미치는 합산 효과를 따져 '가장 옳지 않은' 선지를 고르는 문제이다. 핵심 용어 한 줄 정의: '선수수익(부채)'은 아직 제공하지 않은 용역에 대해 미리 받은 돈이라 시간이 지난 만큼 수익으로 바꾸고, '선급비용(자산)'은 아직 쓰지 않은 기간분으로 미리 낸 돈이라 쓴 만큼만 비용으로 인식한다.

조건 정리

결산일은 20X1년 12월 31일이며, 세 거래의 '최초 회계처리'가 발생주의와 어긋나 있으므로 경과 기간만큼 바로잡아야 한다.
- 거래1: 9월 초에 6개월 임대용역 대가 60,000원(월 10,000원)을 받고 전액 '선수임대료(부채)'로 인식 → 9월~12월 4개월 경과.
- 거래2: 10월 초에 1년분 보험료 12,000원을 내고 전액 '선급보험료(자산)'로 인식 → 10월~12월 3개월 경과.
- 거래3: 12월 초에 1년분 창고 사용료 60,000원을 내고 전액 '임차료(비용)'로 인식 → 12월 1개월만 경과(11개월분은 아직 안 씀).

NoteBase

사용할 공식

경과분(인식할 금액)과 미경과분(이연할 금액)을 월수로 안분한다.
경과분 = 총액 × 경과 개월전체 개월, 미경과분 = 총액 × 남은 개월전체 개월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수익과 비용은 '시간이 지나 실제로 제공·소비된 부분'만 당기에 잡아야 하므로(발생주의), 받은·낸 돈을 사용 기간에 비례해 나눠야 한다. 선수임대료(부채)는 경과분만큼 수익으로, 선급보험료(자산)는 경과분만큼 비용으로 바꾸고, 비용으로 잡아둔 임차료는 미경과분만큼 자산으로 되돌린다.

계산 과정

1단계) 거래1 수정분개: 경과 수익 $= 60{,}000 \times \frac{4}{6} = 40{,}000$원. (차) 선수임대료 40,000 / (대) 임대료수익 40,000 → 부채 40,000원 감소, 수익 40,000원 증가.
2단계) 거래2 수정분개: 경과 비용 $= 12{,}000 \times \frac{3}{12} = 3{,}000$원. (차) 보험료 3,000 / (대) 선급보험료 3,000 → 자산 3,000원 감소, 비용 3,000원 증가.
3단계) 거래3 수정분개: 미경과 $= 60{,}000 \times \frac{11}{12} = 55{,}000$원. (차) 선급임차료 55,000 / (대) 임차료 55,000 → 자산 55,000원 증가, 비용 55,000원 감소.
4단계) 합산하면 다음과 같다.
- 비용 변동 $= +3{,}000 - 55{,}000 = -52{,}000$ → 비용 52,000원 감소.
- 부채 변동 $= -40{,}000$ → 부채 40,000원 감소.
- 자산 변동 $= -3{,}000 + 55{,}000 = +52{,}000$ → 자산 52,000원 증가.
- 당기순이익 변동 $= (+40{,}000) - (-52{,}000) = +92{,}000$ → 당기순이익 92,000원 증가.

선지 판단

① X (가장 옳지 않음, 정답) → 비용은 거래2에서 3,000원 늘지만 거래3에서 55,000원 줄어 순효과가 52,000원 '감소'한다. '비용은 50,000원 증가한다'는 방향(증가)과 금액(50,000원) 모두 틀린 표현 → 올바른 표현은 '비용은 52,000원 감소한다'.
② O → 부채를 바꾼 것은 거래1뿐이다. 선수임대료 40,000원을 수익으로 대체하므로 부채 총액은 40,000원 감소한다. 맞는 표현이다.
③ O → 자산은 거래2에서 선급보험료 3,000원 줄고 거래3에서 선급임차료 55,000원 늘어 순증 52,000원이다. 자산 총액 52,000원 증가가 맞다.
④ O → 당기순이익은 수익 +40,000원, 비용 순 -52,000원이므로 40,000 + 52,000 = 92,000원 증가한다. 맞는 표현이다.
네 선지 중 틀린 것은 ①뿐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 거래3의 방향 착각: 처음에 '비용(임차료)'으로 잡아둔 것을 미경과분만큼 '자산(선급임차료)'으로 되돌리는 분개이므로 비용이 줄어든다. 이를 빼먹고 거래2만 보면 비용이 늘어난다고 오인해 ①을 옳다고 착각하기 쉽다.
- 월수 안분 실수: 거래1은 9·10·11·12월 4개월, 거래2는 10·11·12월 3개월, 거래3은 12월 1개월(따라서 미경과 11개월)이다. '초'에 시작했으므로 그 달을 포함해 센다.
- 자산 변동 52,000원과 비용 변동 52,000원이 같은 숫자라 헷갈리지만, 방향은 자산 '증가'·비용 '감소'로 반대다. ③을 정답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④의 92,000원은 검산용이다: 자산 순증 52,000원 + 부채 순감 40,000원 = 자본(이익) 증가 92,000원으로 회계등식과 일치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런 결산수정 효과 문제는 '거래별 수정분개를 먼저 쓰고 → 분개의 차·대변을 자산/부채/수익/비용으로 분류해 부호를 매긴 뒤 → 항목별로 합산'하는 순서로 푼다. 특히 최초 처리가 '선수/선급'인지 '수익/비용'인지를 보고 '늘릴지 줄일지' 방향부터 정한다. 마지막에는 자산변동 − 부채변동 = 당기순이익(자본)변동이 맞는지 회계등식으로 검산하면 한 선지의 오류를 잡아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선수수익(부채) → 경과분만큼 수익으로 전환(부채 감소·이익 증가), 선급비용(자산) → 경과분만큼 비용으로 전환(자산 감소·이익 감소), 비용으로 처리한 선급분 → 미경과분만큼 자산으로 환원(비용 감소·자산 증가·이익 증가). 월수 안분 = 총액 × (해당 개월 ÷ 전체 개월). 검산: 자산변동 − 부채변동 = 당기순이익변동.

NoteBase

문 4. (주)서울은 20X1년 중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던 채무상품을 공정가치-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기로 하였다. 20X1년 말 동 채무상품의 총 장부금액은 ₩100,000, 공정가치는 ₩120,000이었다. 20X2년 말 동 채무상품의 공정가치는 ₩110,000이다. (주)서울이 20X2년도에 인식할 공정가치-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관련 평가손익은? (단, 전기 기말 공정가치와 당기 기초 공정가치는 동일하다.)

① ₩10,000 손실

② ₩10,000 이익

③ ₩20,000 손실

④ ₩20,000 이익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상각후원가측정(AC)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FVPL)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때, 두 가지를 동시에 묻는 문제다. (1) 재분류일이 언제인가 (2) 재분류 시점에 생기는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를 어느 회계연도 당기손익으로 잡는가. 핵심 함정은 재분류 결정을 '20X1년 중'에 했더라도 재분류일은 20X1년 말이 아니라 20X2년 1월 1일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장부금액 100,000원과 공정가치 120,000원의 차이 20,000원 이익이 20X1년이 아니라 20X2년 당기손익에 들어간다.

조건 정리

분류 변경: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AC)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FVPL).
재분류 결정 시점: 20X1년 중(사업모형 변경).
20X1년 말 채무상품의 총 장부금액(상각후원가) = 100,000원, 공정가치 = 120,000원.
20X2년 말 채무상품의 공정가치 = 110,000원.
단서: 전기 기말 공정가치 = 당기 기초 공정가치 → 20X2년 초 공정가치 = 120,000원.
구할 값: 20X2년도에 FVPL 금융자산 관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평가손익 총액.

사용할 공식

재분류일은 '사업모형 변경 후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째 날'이다. 20X1년 중 변경 → 재분류일 = 20X2년 1월 1일.
AC → FVPL 재분류 시: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다시 측정하고, (재분류일 공정가치 − 재분류 전 상각후원가)를 재분류일이 속한 연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재분류 후에는 FVPL이므로 기말까지의 공정가치 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므로 20X2년 평가손익 = (재분류일 재측정 차이) + (재분류일 공정가치 → 기말 공정가치 변동), 두 손익 모두 20X2년 P/L.

NoteBase

계산 과정

재분류일이 20X2년 1월 1일이므로 두 손익이 모두 20X2년에 잡힌다.
1. 재분류일(20X2년 초) 공정가치 확정: 전기 기말 공정가치 = 당기 초 공정가치 → 120,000원.
2. 재분류일 재측정 손익: 공정가치 120,000원 − 재분류 전 상각후원가 100,000원 = 20,000원 이익(당기손익). 재분류 후 장부금액은 120,000원이 된다.
3. 20X2년 말 평가손익: 기말 공정가치 110,000원 − 재분류일 공정가치 120,000원 = 10,000원 손실(당기손익).
4. 20X2년 당기손익 합계: 20,000원 − 10,000원 = 10,000원 이익.
따라서 20X2년도에 인식할 평가손익은 10,000원 이익 → 2번.

선지 판단

① ₩10,000 손실 → X. 재분류일을 20X1년 말로 오해해서 20,000원 이익을 20X1년에 빼버리고, 20X2년에는 공정가치 하락 10,000원만 남는다고 본 함정. 재분류일은 20X2년 1월 1일이라 20,000원 이익도 20X2년에 잡힌다. (틀린 표현: 10,000원 손실 → 올바른 표현: 10,000원 이익)
② ₩10,000 이익 → O. 재분류일 재측정 이익 20,000원과 20X2년 중 공정가치 하락 10,000원을 합하면 순이익 10,000원이다.
③ ₩20,000 손실 → X. 재분류일 손익을 100,000원 − 120,000원 = −20,000원으로 부호를 거꾸로 본 값. 실제로는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커서 이익이 난다. (틀린 표현: 20,000원 손실 → 올바른 표현: 순액 10,000원 이익)
④ ₩20,000 이익 → X. 재분류일 재측정 이익 20,000원만 적고, 같은 해 공정가치가 120,000원에서 110,000원으로 떨어진 10,000원 손실을 합산하지 않은 오답. (틀린 표현: 20,000원 이익 → 올바른 표현: 10,000원 이익)

오답 포인트

재분류일을 잘못 잡는 것이 1순위 함정이다. '20X1년 중 결정'이라도 재분류는 결정한 날이 아니라 변경 후 첫 보고기간 첫째 날(20X2년 1월 1일)부터 전진 적용한다. 그래서 20,000원 이익이 20X1년이 아닌 20X2년에 들어간다(①의 함정).
두 번째는 합산 누락이다. 재분류일 이익 20,000원과 기말 평가손실 10,000원은 둘 다 20X2년 당기손익이므로 반드시 더해야 한다(④의 함정).
세 번째는 기준점 혼동이다. 기말 평가손익은 종전 상각후원가 100,000원이 아니라 재분류일 공정가치 12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전기 기말 공정가치 = 당기 초 공정가치' 단서를 놓치면 재분류일 공정가치(120,000원)를 못 잡는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C → FVPL 재분류 문제는 순서대로 푼다. (1) 재분류일부터 확정: '~년 중 변경'이면 재분류일은 그 다음 해 1월 1일이다. (2) 재분류일에 '재분류일 공정가치 − 재분류 전 상각후원가' 차이를 그 해 당기손익으로 잡는다(여기서 +20,000원). (3) 재분류 후 장부금액을 재분류일 공정가치로 갱신한다. (4) 같은 해 기말까지의 공정가치 변동을 추가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여기서 −10,000원). (5) 묻는 연도(20X2년)에 발생한 손익을 모두 더한다. 출발 분류가 FVOCI 채무상품이면 그동안 기타포괄손익에 쌓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점이 달라지므로, '어느 분류에서 어느 분류로' 가는지부터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재분류일 = 사업모형 변경 후 첫 보고기간 첫째 날(전진 적용, 소급 금지).
AC → FVPL: 재분류일 공정가치로 측정, (공정가치 − 상각후원가) 차이는 당기손익.
당해 연도 손익 = 재분류일 재측정 손익 + 기말 평가손익(둘 다 P/L).
이 문제 숫자: 20X2년 초 +20,000원, 20X2년 말 −10,000원 → 합계 +10,000원 이익.
한 줄 함정: '결정한 해'가 아니라 '다음 해 첫날'이 재분류일.

NoteBase

문 5. 투자부동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가사용의 개시나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개발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투자부동산에서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대체한다.

② 자가사용의 종료인 경우에는 자가사용부동산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한다.

③ 제삼자에 대한 운용리스 제공의 약정인 경우에는 재고자산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한다.

④ 재고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장부금액과 대체시점의 공정가치의 차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K-IFRS 제1040호(투자부동산)의 '계정대체' 규정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두 가지다. (1) 용도가 변경될 때 어느 계정에서 어느 계정으로 대체하는가(대체의 방향), (2)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할 때 대체시점에 발생하는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가, 자본(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가. 선지 ①②③은 대체 방향을, 선지 ④는 차액의 손익 처리를 묻는다.

핵심 개념

투자부동산 =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또는 둘 다)을 얻으려고 보유하는 부동산이다. 판정축은 '보유 목적이 임대·시세차익인가'.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 = 재화·용역의 생산·공급이나 관리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판정축은 '내가 직접 쓰는가'. 재고자산 = 통상적 영업과정에서 판매하려고 보유·개발하는 부동산으로, 판정축은 '팔려고 개발하는가'. 계정대체(용도 변경)는 보유 목적이 실제로 바뀌었다는 증거가 있을 때만 하며, 경영진의 의도 변경만으로는 부족하다. 공정가치모형 대체 차액의 처리는 '출발 계정'에서 갈린다: 재고자산 → 투자부동산(공정가치)이면 차액은 당기손익(재고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와 일관). 자가사용부동산 → 투자부동산(공정가치)이면 재평가 방식으로 처리하여 평가증을 원칙적으로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유형자산 재평가모형과 일관). 즉 출발 계정이 재고자산이냐 유형자산이냐가 당기손익이냐 기타포괄손익이냐를 가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문단 57(1): 자가사용의 개시나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개발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투자부동산에서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대체한다. 임대·시세차익 목적이던 부동산을 이제 내가 직접 쓰기 시작했으므로 유형자산(자가사용부동산)으로 옮기는 것이 맞다.
② O — 문단 57(3): 자가사용의 종료인 경우에는 자가사용부동산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한다. 직접 쓰던 것을 그만두고 임대 등으로 전환하므로 투자부동산으로 옮긴다. ①과 정확히 반대 방향이다.
③ O — 문단 57(4): 제삼자에 대한 운용리스 제공의 약정인 경우에는 재고자산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한다. 팔려고 개발하던 재고자산을 임대(운용리스 제공)하기로 했으므로 임대수익 목적인 투자부동산으로 옮긴다.
④ X — 문단 63: 재고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장부금액과 대체시점의 공정가치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재고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의 회계처리와 일관).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로 고쳐야 한다.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 처리는 출발점이 '자가사용부동산'일 때(문단 61·62)의 규정이며, 선지 ④의 출발점인 '재고자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④가 가장 옳지 않다.

오답 포인트

함정은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 처리를 재고자산 출발 대체에까지 끌어다 붙인 것이다. 공정가치모형에서 차액을 자본(기타포괄손익)으로 보내는 것은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투자부동산' 대체일 때뿐이다(유형자산 재평가모형과의 일관성). 출발 계정이 '재고자산'이면 매각과 동일하게 보아 차액 전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출발 계정이 자가사용부동산인지 재고자산인지'를 흐리게 만든 뒤 손익 항목만 바꿔치기하는 전형적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투자부동산 계정대체 문제는 두 단계로 끊어 본다. 1단계(방향): 용도 변경의 4가지 트리거를 외워 출발·도착 계정을 확인한다 — 자가사용 개시→자가사용부동산으로, 판매목적 개발 개시→재고자산으로, 자가사용 종료→투자부동산으로, 운용리스 제공 약정→투자부동산으로(재고자산에서). 2단계(공정가치모형 차액): '출발 계정'을 본다 — 출발이 재고자산이면 차액은 당기손익(문단 63), 출발이 자가사용부동산이면 재평가 방식=원칙적으로 기타포괄손익(문단 61·62). 손익 항목을 묻는 선지는 항상 '출발 계정'으로 판정한다.

암기 포인트

재고자산→투자부동산(공정가치) 차액 = 당기손익(매각처럼!). 자가사용부동산→투자부동산(공정가치) 차액 = 재평가(기타포괄손익). 운용리스 제공 약정 = 재고자산에서 투자부동산으로.

NoteBase

문 6. (주)서울은 20X1년 초에 수주하여 20X3년 말에 완료한 공사계약에 진행기준을 적용하였으며, 건설용역에 대한 통제는 기간에 걸쳐 이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용역계약금액과 공사기간 중 발생한 원가 및 매기 말 완공을 위한 예상 추가원가는 <보기>와 같다. 진행률 산정에 투입법을 적용한다면,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구분	20X1년	20X2년	20X3년
용역계약금액	₩3,600	₩4,000	₩4,000
당기에 발생한 원가	₩1,200	₩900	₩900
매기 말에 추정한 예상추가원가	₩1,200	₩900	₩0
당기에 청구한 거래대금	₩1,350	₩1,800	₩850
당기에 회수한 거래대금	₩1,200	₩1,500	₩1,300

① 20X1년도 진행률은 50%이다.

② 20X1년도에 인식되는 공사이익은 ₩600이다.

③ 20X2년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계약자산은 ₩350이다.

④ 20X2년도까지의 누적용역이익은 ₩700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기간에 걸쳐 통제가 이전되는 건설계약(진행기준)에서 투입법으로 진행률을 구하고, 각 연도의 누적계약수익과 당기공사이익을 계산한 뒤,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계약자산인지 계약부채인지를 부호로 판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은 누적수익과 누적'청구액'의 비교이며, 회수액은 함정이다.

조건 정리

계약기간은 20X1년 초~20X3년 말, 진행률은 투입법(발생원가 기준)으로 산정한다.
용역계약금액: 20X1년 3,600 → 20X2년·20X3년 4,000(20X2년에 계약금액이 변경됨).
당기발생원가: 20X1년 1,200 / 20X2년 900 / 20X3년 900.
매기 말 예상추가원가: 20X1년 1,200 / 20X2년 900 / 20X3년 0.
당기청구액: 20X1년 1,350 / 20X2년 1,800 / 20X3년 850.
당기회수액: 20X1년 1,200 / 20X2년 1,500 / 20X3년 1,300 (계약자산 계산과 무관한 함정 자료).

NoteBase

사용할 공식

진행률(투입법) =누적발생원가누적발생원가+예상추가원가.
누적계약수익 = 계약금액 × 누적진행률.
당기공사이익 = 당기계약수익 − 당기발생원가.
계약자산 또는 계약부채 = 누적계약수익 − 누적청구액 (양수면 계약자산, 음수면 계약부채). 분모는 추정 총원가이며, 곱하는 계약금액은 변경 후 금액을 쓴다.

계산 과정

[20X1년] 추정 총원가 = 1,200 + 1,200 = 2,400, 진행률 $= \frac{1,200}{2,400} = 50\%$. 누적수익 = 3,600 × 50% = 1,800, 공사이익 = 1,800 − 1,200 = 600.
[20X2년] 누적발생원가 = 1,200 + 900 = 2,100, 추정 총원가 = 2,100 + 900 = 3,000, 누적진행률 $= \frac{2,100}{3,000} = 70\%$. 누적수익 = 4,000 × 70% = 2,800(변경된 계약금액 4,000 사용), 당기수익 = 2,800 − 1,800 = 1,000, 당기공사이익 = 1,000 − 900 = 100, 누적공사이익 = 600 + 100 = 700.
[20X2년 말 계약자산/부채] 누적청구액 = 1,350 + 1,800 = 3,150. 누적수익 2,800 − 누적청구액 3,150 = −350 → 음수이므로 계약부채 350(계약자산이 아님).

선지 판단

① O — 20X1년 진행률은 1,200/(1,200+1,200) = 50%이다. 발생원가와 예상추가원가가 같아 정확히 절반이다.
② O — 20X1년 공사이익 = (3,600 × 50%) − 1,200 = 1,800 − 1,200 = 600이다.
③ X — 20X2년 말은 누적수익 2,800이 누적청구액 3,150보다 작으므로 차액 350은 청구가 수익을 초과한 상태다. 틀린 표현 "계약자산 350" → 올바른 표현 "계약부채 350". 따라서 가장 옳지 않은 선지다.
④ O — 20X2년까지 누적용역이익 = 누적수익 2,800 − 누적원가 2,100 = 700이다(20X1년 600 + 20X2년 100).

오답 포인트

부호 함정이 핵심이다. 누적수익(2,800)과 누적청구액(3,150)의 차이가 음수이면 계약자산이 아니라 계약부채다. 절댓값 350만 보고 ③을 옳다고 넘기면 오답에 걸린다.
청구액과 회수액을 혼동하면 안 된다. 계약자산·계약부채는 '청구액'으로 계산하며, 표에 함께 주어진 회수액(20X1년 1,200, 20X2년 1,500)은 매출채권 회수일 뿐 진행률·수익·계약자산 계산에 쓰지 않는다.
20X2년에 계약금액이 3,600에서 4,000으로 변경된 점을 놓치면 안 된다. 누적수익은 변경 후 4,000에 진행률을 곱해야 한다(3,600을 그대로 쓰면 누적수익 2,520 등 틀린 값이 나온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가장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이므로 틀린 한 선지만 잡으면 된다. 진행기준 문제는 추정 총원가(누적발생+예상추가)로 진행률을 구하고 → 변경된 계약금액 × 진행률 = 누적수익 → 누적수익 − 누적원가 = 누적이익 → 누적수익 − 누적'청구'액의 부호로 계약자산(+)·계약부채(−)를 판정하는 순서로 푼다. 마지막 단계의 부호를 반드시 확인하고 회수액 자료는 무시한다.

암기 포인트

투입법 진행률 = 누적발생원가/추정총원가. 계약자산·계약부채 = 누적계약수익 − 누적청구액(양수 자산, 음수 부채). 곱하는 계약금액은 변경 후 금액, 회수액은 함정. 본 문항 수치: 20X1 진행률 50%·이익 600, 20X2 누적진행률 70%·누적수익 2,800·누적이익 700, 20X2말 누적청구 3,150 → 계약부채 350.

NoteBase

문 7. (주)서울은 20X1년 1월 1일에 기계장치(내용연수 3년, 잔존가치 ₩0)를 ₩600,000에 취득하였다. 기계장치는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하며,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20X1년 말과 20X2년 말 기계장치의 회수가능액은 <보기>와 같다. (주)서울이 20X3년 6월 30일에 동 기계장치를 ₩60,000에 처분하였다면, 인식할 처분손익은? (단, 기계장치 회수가능액 변동은 자산의 손상 혹은 그 회복에 따른 것이며, 감가상각은 월할 계산한다.)

<보기>

구분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사용가치
20X1년도	₩240,000	₩210,000
20X2년도	₩95,000	₩110,000

① ₩5,000 손실

② ₩0

③ ₩5,000 이익

④ ₩10,000 이익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원가모형 유형자산에서 손상차손 인식 → 손상차손환입(환입 한도 적용) → 기중 처분(월할상각)까지 한 흐름으로 이어 처분손익을 구하는 종합 계산 문제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다. 둘째, 손상 후에는 줄어든 장부금액을 남은 내용연수로 다시 연수합계법 배분한다. 셋째, 환입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가졌을 장부금액을 한도로 한다.

조건 정리

취득(20X1.1.1): 취득원가 600,000원, 내용연수 3년, 잔존가치 0원, 연수합계법, 원가모형. 연수의 합 = 3+2+1 = 6. 20X1년 말 회수가능액 = max(240,000, 210,000) = 240,000원. 20X2년 말 회수가능액 = max(95,000, 110,000) = 110,000원. 처분(20X3.6.30): 처분금액 60,000원, 감가상각은 월할. 구할 값은 처분손익이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연수합계법 상각비 = (취득원가 또는 손상 후 장부금액) × 남은 내용연수남은 내용연수의 합. 회수가능액 = max(순공정가치, 사용가치). 손상차손 = 장부금액 − 회수가능액(회수가능액이 더 작을 때). 환입 후 장부금액 = min(회수가능액, 손상이 없었을 경우의 장부금액). 처분손익 = 처분금액 − 처분시점 장부금액.

계산 과정

1) 20X1년 상각비 = $600{,}000 \times \frac{3}{6} = 300{,}000$ → 장부금액 300,000원.
2) 20X1년 말 손상: 회수가능액 240,000 < 300,000 → 손상차손 60,000원 인식 → 장부금액 240,000원.
3) 20X2년 상각(손상 후 재배분): 남은 내용연수 2년이므로 연수합 2+1=3. $240{,}000 \times \frac{2}{3} = 160{,}000$ → 장부금액 80,000원.
4) 20X2년 말 환입: 회수가능액은 110,000원이지만 한도(손상이 없었다면)는 $600{,}000 - 300{,}000 - 200{,}000 = 100{,}000$원. 환입 후 장부금액 = min(110,000, 100,000) = 100,000원, 환입액 = 100,000 − 80,000 = 20,000원.
5) 20X3년 상각(6개월 월할): 남은 내용연수 1년이므로 $100{,}000 \times \frac{6}{12} = 50{,}000$ → 처분시점 장부금액 50,000원.
6) 처분손익 = 60,000 − 50,000 = +10,000원(처분이익).

선지 판단

① 5,000원 손실 → X: 처분금액 60,000원이 장부금액 50,000원보다 크므로 손실이 아니라 이익이다. '손실' 방향 자체가 틀렸다.
② 0원 → X: 장부금액 50,000원과 처분금액 60,000원이 같지 않아 차액 10,000원이 발생한다. 환입을 빠뜨리면 0처럼 보일 수 있으나 정확히 계산하면 0이 아니다.
③ 5,000원 이익 → X: 이익 방향은 맞지만 금액이 틀렸다. 6개월 월할상각을 정확히 하면 상각비 50,000원, 처분이익은 10,000원이다.
④ 10,000원 이익 → O: 처분금액 60,000원 − 처분시점 장부금액 50,000원 = +10,000원. 손상(−60,000), 환입(+20,000), 20X3년 6개월 월할상각(50,000)을 모두 반영한 결과로 정답이다.

오답 포인트

첫째, 손상 후 20X2년 상각을 $600{,}000 \times \frac{2}{6}$로 계산하면 안 된다. 손상 후 장부금액 240,000원을 남은 내용연수 2년(연수합 3)에 다시 배분해 160,000원이다. 둘째, 환입을 회수가능액 110,000원까지 다 올리면 안 된다. 손상이 없었을 경우 장부금액 100,000원이 천장이므로 환입은 20,000원까지만 가능하다. 셋째, 20X3년은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분만 상각한다. 1년치를 다 상각하거나 상각을 빼먹으면 장부금액이 어긋나 처분손익이 틀린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손상·환입이 섞인 처분손익 문제는 연도별 장부금액 사다리를 직접 그린다. 정상상각 → 손상(회수가능액=둘 중 큰 값과 비교) → 손상 후 장부금액을 남은 내용연수로 재배분 → 환입(한도=손상 없었을 경우 장부금액) → 처분연도 월할상각 → 처분금액 − 최종 장부금액 순서다. 이 문제의 숫자 흐름은 300,000 → (손상)240,000 → (상각)80,000 → (환입)100,000 → (반년상각)50,000이며 처분금액 60,000원으로 10,000원 이익이다. 환입 한도와 월할만 놓치지 않으면 답이 갈린다.

암기 포인트

회수가능액 = max(순공정가치, 사용가치). 손상 후에는 새 장부금액을 남은 내용연수로 다시 연수합계법 배분(여기선 분모 2+1=3). 환입 한도 =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의 장부금액(여기선 100,000원). 기중 처분은 처분월까지 월할상각. 처분손익 = 처분금액 − 처분시점 장부금액(이익 +, 손실 −).

NoteBase

문 8. (주)서울은 8년 전에 취득가액 ₩10,000,000의 설비기계를 사용해오다가, 당기 중 ₩1,500,000에 처분하려고 한다. 이 설비기계의 감가상각누계액은 ₩8,000,000이며, 당기 적용 법인세율은 30%이다. 해당 설비기계 처분으로 인한 실질적인 현금유입액은?

① ₩1,050,000

② ₩1,500,000

③ ₩1,650,000

④ ₩2,000,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유형자산을 장부금액보다 싸게 팔면 처분손실이 생기고, 이 손실은 과세소득을 줄여 법인세를 깎아 준다. '실질적인 현금유입액'은 단순히 받은 처분대금만이 아니라, 처분손실로 아낀 법인세(절세효과)까지 더한 금액을 묻는 것이다. 받은 현금과 절세효과를 함께 보는 것이 핵심이다. 용어로, '장부금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금액으로 처분손익 계산의 기준이고, '절세효과'는 손실 때문에 법인세가 줄어 회사에 남는 현금이 늘어나는 효과다.

조건 정리

취득가액 = 10,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 8,000,000원
처분가액(받은 현금) = 1,500,000원
법인세율 = 30%
구할 값 = 처분으로 인한 실질적인 현금유입액(세금효과 반영 후). 처분가액 1,500,000원이 그대로 답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한다.

사용할 공식

장부금액 =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처분손익 = 처분가액 − 장부금액 (음수면 처분손실)
실질적 현금유입액 = 처분가액 + (처분손실 × 세율)
쓰는 이유: 처분가액 자체는 실제 들어오는 현금이다. 여기에 처분손실이 나면 그 손실이 과세소득을 줄여 법인세를 (손실 × 세율)만큼 덜 내게 하므로, 절세된 금액만큼 현금이 더 남는다. 그래서 매각대금에 더해 준다. (반대로 처분이익이 나면 세금을 더 내야 하므로 빼 준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장부금액 = 10,000,000 − 8,000,000 = 2,000,000원
2) 처분손익 = 처분가액 1,500,000 − 장부금액 2,000,000 = −500,000원 → 처분손실 500,000원 발생
3) 절세효과 = 처분손실 500,000 × 30% = 150,000원 (손실만큼 과세소득이 줄어 법인세를 150,000원 덜 낸다)
4) 실질적 현금유입액 = 받은 현금 1,500,000 + 절세효과 150,000 = 1,650,000원

선지 판단

① 1,050,000원 → X. 절세효과를 더하지 않고 오히려 빼는 부호 실수로 나오는 함정 값이다. 처분손실은 세금을 줄여 현금을 늘려주므로 빼는 처리(차감)가 아니라 더하는 처리(가산)가 맞다.
② 1,500,000원 → X. 세금효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단순 처분대금이다. '실질적인 현금유입액'을 물었으므로 절세효과 150,000원을 더해야 한다.
③ 1,650,000원 → O. 장부금액 2,000,000원보다 낮게 처분해 처분손실 500,000원이 났고, 그 절세효과 500,000 × 30% = 150,000원을 처분대금 1,500,000원에 더하면 1,650,000원으로 정확히 일치한다.
④ 2,000,000원 → X. 처분 시점의 장부금액을 그대로 답으로 쓴 값이다. 장부금액은 처분손익 계산의 기준일 뿐 실제 들어오는 현금이 아니다.

오답 포인트

처분손실은 '비용'이라 현금이 더 나가는 것처럼 느껴져 절세효과를 빼버리기 쉽다. 그러나 손실은 과세소득을 줄여 낼 세금을 깎아 주므로 현금 측면에서는 오히려 유입을 늘린다. 그래서 손실의 절세효과는 더한다(반대로 처분이익이면 세금을 더 내므로 뺀다). 절세효과를 빼면 ①(1,050,000원), 세금효과를 통째로 빠뜨리면 ②(1,500,000원), 장부금액과 현금유입을 혼동하면 ④(2,000,000원)가 나온다. '8년 전 취득', '당기' 같은 표현은 풀이에 불필요한 함정 정보로, 감가상각누계액이 직접 주어졌으니 별도 상각 계산은 필요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산 처분의 세후 현금유입을 묻는 문제는 ①장부금액 =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②처분손익 = 처분가액 − 장부금액 ③손익의 부호 확인(손실이면 절세로 현금 증가, 이익이면 세금으로 현금 감소) ④세후 현금유입 = 처분가액 ± (처분손익 × 세율) 순서로 푼다. 이 문항은 처분손실 500,000원이 났으므로 1,500,000 + (500,000 × 30%) = 1,650,000원. 매각대금이 그대로 답이 되는 경우는 세금효과가 없을 때뿐임을 기억하면 ② 같은 함정을 피한다.

암기 포인트

세후 처분 현금유입액 = 처분가액 + (처분손실 × 세율), 또는 = 처분가액 − (처분이익 × 세율). 손실이면 더하고(절세), 이익이면 뺀다(추가 납세). 장부금액 =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본 문제: 1,500,000 + (500,000 × 0.3) = 1,650,000원.

NoteBase

문 9. (주)서울은 20X1년 1월 1일에 건물(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을 ₩100,000에 취득하였다. 건물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며, 재평가모형을 적용한다. 20X1년 말과 20X2년 말 건물의 공정가치가 각각 ₩96,000과 ₩55,000이었다면,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단, (주)서울은 재평가잉여금을 건물 잔여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

① 20X2년도 감가상각비는 ₩20,000이다.

② 20X2년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재평가손실은 ₩5,000이다.

③ 20X2년도 총포괄손익에 미친 영향은 ₩36,000 감소이다.

④ 20X2년도에 재평가잉여금 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 금액은 ₩17,000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에서 (1) 재평가 후 새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한 감가상각비, (2) 공정가치 하락 시 재평가잉여금(OCI)으로 먼저 상계하고 남는 금액만 당기손익(P/L)으로 인식하는 처리, (3) 재평가잉여금의 이익잉여금 대체를 모두 따져 옳은 설명을 고르는 종합 계산 문제다. 핵심은 '재평가잉여금이 남아 있는 만큼은 OCI에서 차감하고, 그 초과분만 당기비용(재평가손실)으로 인식한다'는 원칙이다.

조건 정리

취득: 20X1년 1월 1일, 취득원가 100,000원,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원, 정액법.
재평가모형 적용.
공정가치: 20X1년 말 96,000원, 20X2년 말 55,000원.
재평가잉여금은 매년 '재평가잉여금 잔액 ÷ 잔여 내용연수'만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
구할 값: 20X2년도 감가상각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재평가손실, 총포괄손익 영향, 이익잉여금 대체액.

사용할 공식

정액법 감가상각비 = 재평가 후 장부금액 - 잔존가치잔여 내용연수
재평가 감소액 배분: 재평가 감소액 = (OCI로 차감하는 재평가잉여금 잔액) +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초과분).
이유: 공정가치가 떨어지면 그 자산에 과거 쌓아 둔 재평가잉여금이 있는 만큼은 OCI(재평가잉여금)에서 먼저 깎고, 모자라는 부분만 당기손실로 인식한다. 또 잔여 내용연수가 줄었으므로 감가상각은 직전 재평가 장부금액을 새 분자로 써야 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20X1년 감가상각비 $= \frac{100{,}000}{5} = 20{,}000$원 → 재평가 전 장부금액 = 100,000 − 20,000 = 80,000원.
2. 20X1년 말 재평가: 공정가치 96,000 − 장부 80,000 = 16,000원 증가 → 재평가잉여금(OCI) 16,000원 적립.
3. 20X2년 감가상각비 $= \frac{96{,}000}{4} = 24{,}000$원 (잔여 내용연수 4년) → 재평가 전 장부금액 = 96,000 − 24,000 = 72,000원.
4. 20X2년 중 재평가잉여금의 이익잉여금 대체: 16,000 ÷ 4 = 4,000원 → 대체 후 잉여금 잔액 = 16,000 − 4,000 = 12,000원.
5. 20X2년 말 재평가: 장부 72,000 − 공정가치 55,000 = 17,000원 감소.
6. 감소액 17,000원 배분: 남은 재평가잉여금 12,000원을 OCI에서 차감, 초과분 17,000 − 12,000 = 5,000원을 당기손익(재평가손실)으로 인식.
7. 20X2년 총포괄손익 영향: 당기손익 −(24,000 + 5,000) = −29,000원, 기타포괄손익 −12,000원, 합계 −41,000원. (잉여금 4,000원의 이익잉여금 대체는 자본 안에서의 이동이라 총포괄손익에 영향 없음)

선지 판단

① X — 20X2년도 감가상각비는 20,000원이 아니라 $\frac{96{,}000}{4} = 24{,}000$원이다. 재평가 후에는 새 장부금액 96,000원과 줄어든 잔여 내용연수 4년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 '20,000원'은 취득원가 기준 최초 상각액을 그대로 가져온 오답이다. (틀린 표현 '20,000원' → 올바른 표현 '24,000원')

② O — 20X2년 말 재평가 감소액 17,000원 중 남은 재평가잉여금 12,000원은 OCI에서 차감하고, 초과분 17,000 − 12,000 = 5,000원만 당기손익(재평가손실)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재평가손실 5,000원은 옳다.

③ X — 20X2년도 총포괄손익에 미친 영향은 36,000원 감소가 아니라 41,000원 감소다. 당기손익 감소 29,000원(감가상각 24,000 + 재평가손실 5,000)과 기타포괄손익 감소 12,000원(재평가잉여금 차감)을 합하면 41,000원이다. '36,000원'은 감가상각비 24,000원에 OCI 차감 12,000원만 더하고 당기 재평가손실 5,000원을 빠뜨린 오답이다. (틀린 표현 '36,000원 감소' → 올바른 표현 '41,000원 감소')

④ X — 20X2년도에 재평가잉여금 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금액은 17,000원이 아니라 '잉여금 잔액 ÷ 잔여 내용연수' = 16,000 ÷ 4 = 4,000원이다. '17,000원'은 20X2년 말 재평가 감소 총액을 대체액으로 착각한 오답이다. (틀린 표현 '17,000원' → 올바른 표현 '4,000원')

NoteBase

오답 포인트

감가상각 분자/분모 혼동: 재평가 후에는 '취득원가 ÷ 전체 내용연수'가 아니라 '재평가 장부금액 ÷ 잔여 내용연수'를 쓴다(①). 잔여 내용연수가 5년에서 4년으로 줄어든 것을 놓치면 안 된다.
재평가손실 전액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실수: 기존 재평가잉여금이 있으면 그만큼은 OCI에서 먼저 차감하고 초과분만 P/L로 간다(②). 잉여금 잔액은 20X2년 대체액 4,000원을 뺀 12,000원임을 기억해야 한다.
총포괄손익 vs 당기손익 혼동: 총포괄손익에는 당기손익(감가상각 + 재평가손실)뿐 아니라 OCI 변동(재평가잉여금 차감)까지 모두 포함된다(③). 반면 자본 내 이동인 '이익잉여금 대체'는 총포괄손익을 바꾸지 않는다.
대체액과 감소액 혼동: 이익잉여금 대체액은 '잉여금 ÷ 잔여 내용연수'일 뿐, 그 해의 재평가 감소액 17,000원과는 무관하다(④).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평가모형 2년차 문제는 ① (재평가 후 장부금액 ÷ 잔여 내용연수)로 감가상각비를 먼저 구하고, ② 재평가 증가는 OCI(재평가잉여금), 재평가 감소는 '남은 잉여금 차감 → 초과분 당기손실' 순서로 배분하며, ③ 잉여금의 이익잉여금 대체액은 '잉여금 잔액 ÷ 잔여 내용연수'로 계산하되 총포괄손익에는 영향이 없음을, ④ 총포괄손익 영향은 결국 그 해 당기손익 감소액과 OCI 감소액의 합과 일치함을 점검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단위(원)와 연도(20X1/20X2)를 끝에 한 번 더 검산한다.

암기 포인트

재평가 감소: 남은 재평가잉여금 먼저 OCI에서 차감 → 초과분만 당기손실. 재평가 후 감가상각 =재평가 장부금액잔여 내용연수. 이익잉여금 대체액 =재평가잉여금 잔액잔여 내용연수이며 자본 내 이동이라 총포괄손익에 영향 없음. 총포괄손익 영향 = 당기손익 영향 + 기타포괄손익 영향.

NoteBase

문 10.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재무제표의 작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무제표는 해당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②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되는 두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③ 재무제표의 과목은 해당 항목의 중요성에 따라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과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④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할 경우 내부거래는 상계하지 아니한다.

정답 4번

쟁점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재무제표 작성원칙 네 가지(직전 연도와 비교하는 형식·계속성·중요성에 따른 과목 표시·통합 작성 시 내부거래 상계)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특히 여러 국가회계실체를 하나로 통합(연결)하여 작성할 때 내부거래를 '제거(상계)'하느냐 '그대로 두느냐'가 정답을 가른다. 발문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므로 규칙과 반대로 진술된 한 선지를 찾아야 한다.

용어 풀이

내부거래: 하나의 통합 재무제표로 묶이는 국가회계실체들 사이에서 발생한 거래로, 통합 시 상계(제거)되어야 하는 거래(예: A실체가 B실체에 자금 이전).
계속성의 원칙: 회계처리 기준과 추정을 회계연도마다 함부로 바꾸지 않고 계속 적용하여 기간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는 원칙.
중요성: 그 항목의 금액·성격이 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핵심 구분

통합하여 작성할 때 내부거래는 '상계한다(=제거한다)'가 원칙이다. 같은 거래를 두 실체에서 이중으로 계상하면 통합재무제표 금액이 부풀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계하지 아니한다'는 서술은 원칙과 정반대다. 또한 ③의 '과목을 통합 표시'(계정을 묶어 표시하는 방법)와 ④의 '재무제표를 통합 작성'(여러 실체를 하나로 묶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이니 혼동하지 말 것. (근거: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재무제표의 작성원칙)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재무제표는 해당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규칙의 비교형식 작성원칙 그대로다.
② O — 비교형식으로 작성되는 두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기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동일 기준을 유지하라는 것으로 맞는 서술이다.
③ O — 재무제표의 과목은 해당 항목의 중요성에 따라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과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중요성에 따른 과목 표시 재량을 정한 규정과 일치한다.
④ X — 틀린 표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할 경우 내부거래는 상계하지 아니한다' → 올바른 표현 '통합하여 작성할 경우 내부거래는 상계하여 작성한다'. 내부거래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중계상이 되어 규칙과 정반대인 잘못된 서술이므로 이 선지가 정답이다.

오답 포인트

'통합'이라는 단어 때문에 ③(과목을 보기 좋게 묶어 표시)과 ④(여러 실체를 하나로 묶어 작성)를 헷갈리기 쉽다. 둘은 전혀 다른 문제다. 또 ④의 '상계하지 아니한다'를 무심코 맞는 말처럼 읽으면 함정에 걸린다. 통합(연결)의 본질은 중복을 없애는 것이므로 내부거래는 반드시 상계(제거)한다. ①~③은 규칙 문구를 거의 그대로 옮긴 정상 서술이라 흔들릴 필요가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재무제표 작성원칙 문제에서 '내부거래'가 나오면 곧장 '상계(제거)한다'를 떠올린다. 선지가 '상계하지 아니한다 / 제거하지 않는다 / 그대로 표시한다'처럼 쓰여 있으면 그 선지가 틀린 것이다. 비교형식·계속성·중요성에 따른 과목 표시는 모두 맞는 서술로 출제되니 함정으로 보지 말 것.

암기 포인트

국가회계 재무제표 작성원칙 4종: (1) 직전 연도와 비교하는 형식, (2) 두 연도는 계속성 원칙, (3) 중요성에 따라 과목 별도표시 또는 통합표시 가능, (4) 통합 작성 시 내부거래는 상계(제거). 핵심 한 줄: '통합하면 내부거래는 지운다(상계). 상계하지 아니한다면 틀린 선지!'

문 11. (주)서울은 임대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20X1년 1월 1일 건물을 ₩1,000,000에 취득하였다. 동 건물의 내용연수는 10년, 잔존가치는 없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주)서울은 모든 투자부동산에 대해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20X1년 말 동 건물의 공정가치는 ₩1,200,000, 매각부대원가는 ₩50,000일 때, 동 건물에 대한 회계처리가 20X1년 말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① ₩150,000 증가

② ₩200,000 증가

③ ₩250,000 증가

④ ₩300,000 증가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임대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건물은 투자부동산이다. 투자부동산에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면 (1)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2)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여 그 변동분(평가손익)을 전액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 문제의 핵심은 '감가상각 0원'과 '매각부대원가 50,000원은 사용하지 않는 미끼'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잡는 것이다.

조건 정리

취득일 20X1년 1월 1일, 취득원가 1,000,000원, 보유목적은 임대수익(투자부동산)이다.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이지만 공정가치 모형에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므로 쓰지 않는다. 평가모형은 공정가치 모형이고, 20X1년 말 공정가치는 1,200,000원, 매각부대원가는 50,000원이다.

사용할 공식

공정가치 모형의 당기손익 영향 = 기말 공정가치 − 직전 장부금액(취득 첫 해이므로 취득원가). 감가상각비는 인식하지 않으며, 매각부대원가는 차감하지 않는다.

계산 과정

감가상각비 = 0원 (공정가치 모형은 상각하지 않으므로 내용연수 10년·잔존가치 0은 무시한다). 공정가치 평가이익 = 1,200,000 − 1,000,000 = 200,000원. 매각부대원가 50,000원은 실제로 처분하지 않았고 공정가치 측정 시에도 차감하지 않으므로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20X1년 말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200,000원 증가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150,000원 증가 → X. 평가이익 200,000원에서 매각부대원가 50,000원을 잘못 뺀 값이다. '공정가치에서 매각부대원가 차감' → 올바른 처리는 '공정가치를 그대로 사용'이므로 틀리다.
② 200,000원 증가 → O. 감가상각 없이 공정가치 변동 200,000원(=1,200,000−1,000,000)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므로 옳다.
③ 250,000원 증가 → X. 평가이익 200,000원에 매각부대원가 50,000원을 더한 값으로, 부대원가를 가산할 근거가 없어 틀리다.
④ 300,000원 증가 → X. 공정가치 모형인데도 감가상각비 100,000원(=1,000,000÷10)을 더해 계산했거나 모형을 혼동한 값으로, 공정가치 모형은 상각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오답 포인트

첫째, 내용연수 10년·잔존가치 0이 제시돼 감가상각비 100,000원을 빼거나 더하기 쉽지만(원가모형 착각), 공정가치 모형은 감가상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 둘째, 매각부대원가 50,000원은 '순공정가치(공정가치−매각부대원가)' 개념과 헷갈리게 하는 미끼이며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의 평가손익 계산에는 쓰지 않는다 — 이 때문에 ①·③이 매력적인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투자부동산 문제는 먼저 '어느 모형인가'부터 확인한다. 공정가치 모형이면 감가상각 0, 평가손익(기말 공정가치 − 기초 장부금액)을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원가모형이면 감가상각만 비용 처리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는다(주석 공시). 내용연수·잔존가치·매각부대원가 같은 부수 금액은 대개 미끼이므로, 실제로 처분하지 않았다면 무시하고 한 줄로 끝낸다.

암기 포인트

투자부동산은 원가모형(감가상각 O, 공정가치 변동 인식 X)과 공정가치 모형(감가상각 X, 공정가치 변동 전액 당기손익) 중 하나를 선택한다. 공정가치 모형 평가손익 = 기말 공정가치 − 직전 장부금액 = 1,200,000 − 1,000,000 = 200,000원. 매각부대원가는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이나 손상의 순공정가치에서 쓰는 개념이지,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 평가에는 쓰지 않는다.

NoteBase

문 12. (주)서울은 제조업체로서, 20X3년 중 원재료를 ₩28,000,000에 매입하였고, 직접노무원가로 ₩22,000,000, 제조간접원가로 ₩35,000,000을 지출하였다. 20X3년 재고자산에 대한 정보가 <보기>와 같다면, 20X3년의 매출원가는? (단, 원재료는 모두 직접재료이다.)

<보기>

구분	원재료	재공품	제품
기초 재고자산	₩2,000,000	₩3,000,000	₩4,000,000
기말 재고자산	₩3,000,000	₩5,000,000	₩6,000,000

① ₩80,000,000

② ₩82,000,000

③ ₩84,000,000

④ ₩86,000,0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제조기업의 원가흐름을 따라 직접재료원가 → 당기총제조원가 → 당기제품제조원가 → 매출원가 순서로 계산해 매출원가를 구하는 문제다. 원재료·재공품·제품 세 종류의 재고에 각각 '기초 + 당기유입 − 기말' 공식을 차례로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며, 어느 단계에서 멈추느냐에 따라 오답이 그대로 보기로 배치되어 있다.

조건 정리

원재료 당기매입액 28,000,000원 (원재료는 모두 직접재료), 직접노무원가 22,000,000원, 제조간접원가 35,000,000원. 기초 재고는 원재료 2,000,000원 / 재공품 3,000,000원 / 제품 4,000,000원, 기말 재고는 원재료 3,000,000원 / 재공품 5,000,000원 / 제품 6,000,000원. 구할 값은 20X3년 매출원가다. '원재료는 모두 직접재료'이므로 매입 원재료 사용액이 곧 직접재료원가이고, 간접재료로 빠지는 금액은 없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각 단계마다 재고 공식 '기초 + 당기유입 − 기말 = 당기유출'을 적용한다.
직접재료원가 = 기초원재료 + 당기매입액 − 기말원재료
당기총제조원가 = 직접재료원가 + 직접노무원가 + 제조간접원가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초재공품 + 당기총제조원가 − 기말재공품
매출원가 = 기초제품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말제품
원가는 원재료 창고 → 생산 라인(재공품) → 완성품 창고(제품)를 순서대로 통과한 뒤 팔릴 때 매출원가가 되므로, 단계마다 들어온 것에서 남은 것(기말)을 빼면 그 단계에서 빠져나간 원가가 나온다.

계산 과정

1단계 직접재료원가 = 2,000,000 + 28,000,000 − 3,000,000 = 27,000,000원
2단계 당기총제조원가 = 27,000,000 + 22,000,000 + 35,000,000 = 84,000,000원
3단계 당기제품제조원가 = 3,000,000 + 84,000,000 − 5,000,000 = 82,000,000원
4단계 매출원가 = 4,000,000 + 82,000,000 − 6,000,000 = 80,000,000원
따라서 매출원가는 80,000,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80,000,000원 → O. 네 단계를 모두 거친 정확한 매출원가다.
② 82,000,000원 → X. 이것은 당기제품제조원가다. 마지막 제품 단계 조정(기초제품 +4,000,000, 기말제품 −6,000,000, 순효과 −2,000,000)을 빠뜨리고 한 단계 일찍 멈춘 값이다.
③ 84,000,000원 → X. 이것은 당기총제조원가다. 재공품·제품 두 단계의 재고 조정을 모두 생략한 값이다.
④ 86,000,000원 → X. 재고 증감의 부호를 거꾸로 본 값이다. 재공품·제품에서 (기말 − 기초)를 더해버리면 82,000,000 + 2,000,000 + 2,000,000 식으로 부풀려진다. 재고가 늘면(기말 > 기초) 빠져나간 원가는 줄어들므로 '기초 − 기말'로 빼야 한다.

오답 포인트

중간값 함정이 핵심이다. ②(당기제품제조원가)와 ③(당기총제조원가)은 계산 도중 실제로 등장하는 숫자라 끝까지 안 가고 멈추면 그대로 오답이 된다. 묻는 것이 매출원가면 반드시 제품 단계(기초제품 + 제조 − 기말제품)까지 마쳐야 한다. 또 각 재고 단계에서 더하는 것은 기초, 빼는 것은 기말이며, 위치를 바꾸면 ④처럼 값이 커진다. '원재료는 모두 직접재료'라는 단서가 있으므로 매입액 전부가 직접재료원가이고, 간접재료로 떼는 금액은 없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원재료·재공품·제품 세 칸의 기초·기말이 모두 주어지면 4단계 사다리(직접재료원가 → 당기총제조원가 → 당기제품제조원가 → 매출원가)를 끝까지 내려가야 한다. 세 개의 재고 박스(T계정)를 순서대로 그려 박스마다 '기초 + 들어온 것 − 기말 = 나간 것'을 적용하면 어느 단계까지 처리했는지 헷갈리지 않아 중간값(②·③) 함정을 피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원가흐름 4단계 공식은 모두 '기초 + 유입 − 기말' 구조로 같다. 원재료 박스 → 직접재료원가, 재공품 박스 → 당기제품제조원가, 제품 박스 → 매출원가로 한 칸씩 이동한다. 가공원가(직접노무 + 제조간접)는 2단계 당기총제조원가에서 한 번만 더한다.

NoteBase

문 13. (주)서울은 사용 중인 기계장치를 (주)대한의 차량운반구와 교환하기로 하였다. 교환시점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54,000(취득원가 ₩80,000, 감가상각누계액 ₩26,000)이고, 공정가치는 ₩70,000이었다. (주)대한의 차량운반구의 장부금액은 ₩54,000(취득원가 ₩100,000, 감가상각누계액 ₩46,000)이고 공정가치는 알 수 없다. (주)서울은 차량운반구를 교환하면서 현금 ₩3,000을 지급하였다. (주)서울이 인식할 차량운반구 취득원가는? (단,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다.)

① ₩54,000

② ₩57,000

③ ₩70,000

④ ₩73,0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상업적 실질이 있는 자산 교환에서 취득자산(차량운반구)의 취득원가를 구하는 문제다. 상업적 실질이 있으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 현금수수액'으로 취득원가를 측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받는 자산인 차량운반구의 공정가치를 '알 수 없다'고 못박아, 제공한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쓰게 유도한 전형적 함정이다.

조건 정리

제공 자산(㈜서울의 기계장치): 공정가치 70,000원, 장부금액 54,000원(취득원가 8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26,000원). / 취득 자산(㈜대한의 차량운반구): 공정가치 알 수 없음(취득원가 1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46,000원, 장부금액 54,000원은 ㈜서울 계산과 무관한 교란 자료). / ㈜서울이 추가로 지급한 현금 3,000원. /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 있음. / 묻는 것은 ㈜서울이 인식할 차량운반구의 취득원가.

사용할 공식

상업적 실질이 있을 때: 취득원가 =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 지급한 현금 - 수령한 현금 교환에 상업적 실질이 있으면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원칙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기준이다. 다만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면 그것을 쓰는데, 이 문제는 받는 차량운반구의 공정가치가 불명이므로 제공한 기계장치의 공정가치 70,000원을 기준으로 삼는다. 현금을 더 줬으면 그만큼 받은 자산 가치가 크다는 뜻이라 가산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단계: 상업적 실질이 있으므로 공정가치 기준 적용을 결정한다.
2단계: 측정 기준 = 제공한 기계장치 공정가치 70,000원(차량운반구 공정가치는 불명이라 사용 불가).
3단계: 현금 3,000원을 추가 지급했으므로 가산한다.
4단계: 차량운반구 취득원가 = 70,000 + 3,000 = 73,000원.
참고: 장부금액 54,000원, 취득원가 8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26,000원은 처분손익 계산용 정보일 뿐 취득원가 산정에는 쓰지 않는다(기계장치 처분이익 = 70,000 - 54,000 = 16,000원, 취득원가와 무관).

선지 판단

① 54,000원 → X. 제공한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취득원가 80,000 - 감가상각누계액 26,000)일 뿐이다. 장부금액은 상업적 실질이 없을 때 쓰는 값이고 현금 가산도 빠졌다 → 공정가치 70,000원을 써야 한다.
② 57,000원 → X. 장부금액 54,000원에 현금 3,000원을 더한 값이다. 현금 가산은 맞지만 측정 기준을 장부금액으로 잘못 잡았다 → 기준을 공정가치 70,000원으로 바꿔야 한다.
③ 70,000원 → X. 제공한 기계장치 공정가치만 가져오고 지급한 현금 3,000원을 빠뜨렸다 → 현금을 더해 73,000원으로 보정해야 한다.
④ 73,000원 → O.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70,000원에 지급한 현금 3,000원을 더한 값으로,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의 공정가치 측정 원칙에 정확히 부합한다.

오답 포인트

측정 기준 혼동: 상업적 실질이 '있으면' 공정가치, '없으면' 장부금액. 문제 끝의 '상업적 실질이 있다'를 놓치면 ①②처럼 장부금액으로 잘못 푼다. / 어느 쪽 공정가치를 쓸지 혼동: 원칙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받는 자산(차량운반구) 공정가치가 '알 수 없음'이라는 단서가 바로 기계장치 공정가치를 쓰라는 신호다. / 현금 부호 실수: 지급하면 가산(+), 수령하면 차감(-). ③은 현금 가산을 통째로 빠뜨린 함정값이다. / 교란 자료에 휘둘리기: ㈜대한 차량운반구의 취득원가 100,000원·감가상각누계액 46,000원·장부금액 54,000원은 ㈜서울 취득원가와 무관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교환 취득원가 문제는 세 단계로 판단한다. (1) 상업적 실질 유무 확인 — 있으면 공정가치, 없으면 장부금액. (2) 기준 자산 선택 — 원칙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받는 자산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면 그쪽, 받는 자산 공정가치가 불명이면 제공 자산 사용. (3) 현금 수수 가감 — 지급하면 +, 수령하면 -. 이번 문항은 '상업적 실질 있음 + 받는 자산 공정가치 불명 + 현금 지급'이 결합된 전형이다.

암기 포인트

상업적 실질 O = 제공 자산 공정가치 기준(지급 현금 +, 수령 현금 -), 처분손익 인식. / 상업적 실질 X = 제공 자산 장부금액 기준, 처분손익 없음. / 제공 자산 공정가치를 못 구할 때만 취득 자산 공정가치 사용. / 이 문제: 70,000(제공 기계장치 공정가치) + 3,000(지급 현금) = 73,000원.

NoteBase

문 14. (주)서울은 회사의 현재 신용등급으로 만기 3년, 표시이자율 연 10%, 액면금액 ₩100,000의 일반사채를 액면금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주)서울은 20X1년 1월 1일에 액면금액 ₩100,000의 전환사채(만기 3년, 표시이자율 연 5%, 사채발행 당시 시장이자율 연 10%, 매기 말 이자지급)를 액면발행하였다. 동 전환사채는 상환할증금 없이 발행되었으며, 전환가격은 ₩10,000이다. (주)서울의 보통주 액면금액은 ₩5,000이며, 동 전환사채의 최초 인식을 위한 분개는 <보기>와 같다. (주)서울의 전환사채 전부가 20X2년 1월 1일에 보통주로 전환되었다면, 전환에 따른 자본의 총액은? (단,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 차이로 인해 약간의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삿값을 선택한다. 또한, 전환권대가는 전환권이 행사되어 주식으로 발행될 때 행사된 부분만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한다.)

<보기>

(차) 현 금	₩100,000	(대) 전환사채	₩100,000
전환권조정	₩12,435	전환권대가	₩12,435

① ₩87,565

② ₩91,322

③ ₩100,000

④ ₩103,757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전환사채(상환할증금 없이 액면발행)가 보통주로 전환될 때, 전환으로 새로 기록되는 자본(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의 합계를 구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전환일의 사채(부채요소) 장부금액을 발행 당시 시장이자율로 1년 상각해 구한다. 둘째, 발행 때 자본으로 분리해 둔 전환권대가를 전환 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한다는 단서를 빠뜨리지 않는다. 전환사채는 발행금액을 부채요소(사채)와 자본요소(전환권대가)로 나누어 인식한다.

조건 정리

전환사채 액면 100,000원, 표시이자율 연 5%(매기 말 이자 5,000원), 발행 당시 시장이자율 연 10%, 만기 3년, 상환할증금 없이 액면발행. 전환가격 10,000원, 보통주 액면 5,000원. 발행 시 분개(보기): (차)현금 100,000, 전환권조정 12,435 / (대)전환사채 100,000, 전환권대가 12,435. 따라서 발행 시 부채요소 장부금액은 100,000-12,435=87,565원, 전환권대가(자본)는 12,435원이다. 20X2.1.1에 전부 전환. 단서: 전환권대가는 행사된 부분만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전환일 부채(사채) 장부금액(유효이자율법):
BV_1 = BV_0 × (1+i) - 표시이자
발행 주식수와 자본금:
주식수 = 액면총액전환가격, 자본금 = 주식수 × 주당 액면
전환으로 기록되는 자본 총액: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BV_1 + 전환권대가
전환 시 부채(사채 장부금액 BV_1)가 자본으로 들어오고, 자본에 있던 전환권대가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되므로 이 둘의 합이 새로 기록되는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의 합이 된다.

계산 과정

1) 발행 시(20X1.1.1) 부채요소 장부금액: 100,000-12,435=87,565원.
2) 전환일(20X2.1.1, 1년 경과) 부채 장부금액: $87{,}565 \times 1.10 - 5{,}000 = 91{,}321.5$ 약 91,322원.
(이자비용 8,756.5원 중 5,000원은 현금이자, 차액 3,756.5원이 전환권조정 상각액이라 부채가 그만큼 늘어난다.)
3) 발행 주식수: 100,000 ÷ 10,000 = 10주. 자본금 = 10주 × 5,000 = 50,000원.
4) 전환 분개(20X2.1.1): (차)전환사채 100,000, 전환권대가 12,435 / (대)전환권조정 8,678(=100,000-91,322), 자본금 50,000, 주식발행초과금 53,757.
5)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50,000 + 53,757 = 103,757원. (검산: 주식발행초과금 = 91,322 + 12,435 - 50,000 = 53,757원.)

선지 판단

① 87,565원 → X. 발행일(20X1.1.1)의 부채요소 장부금액일 뿐, 전환일까지 1년치 유효이자를 가산하지 않은 값이다. '발행 시 사채 장부금액' → 올바른 값은 '전환일 BV1=91,322원'.
② 91,322원 → X. 이는 전환으로 늘어나는 '총자본 순증가액'(부채 91,322원이 자본으로 전환된 금액)이다. 전환권대가는 이미 자본이라 총자본은 그만큼 늘지 않지만, 문제는 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으로 기록되는 금액을 묻고 있어 전환권대가 대체분 12,435원까지 포함해야 한다. 전환권대가를 빠뜨린 함정.
③ 100,000원 → X. 전환사채 액면(명목액)을 그대로 적은 값으로, 전환권조정 미상각분 8,678원을 빼지 않은 오류이다. '전환사채 액면 100,000' → 올바른 값은 '91,322+12,435=103,757'.
④ 103,757원 → O. 전환일 부채 장부금액 91,322원에 자본으로 대체되는 전환권대가 12,435원을 더한 값으로, 자본금 50,000원과 주식발행초과금 53,757원의 합과 일치한다. 단수 차이는 반올림하여 근삿값을 택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표시이자율(5%) 함정: 부채 장부금액 증가는 시장이자율(10%)로 계산한다. 87,565×1.05로 풀면 안 된다.
전환권대가 처리 함정: 전환권대가 12,435원은 이미 자본이라 '총자본 증가'만 보면 91,322원(②)이지만,
'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으로 기록되는 금액'은 전환권대가 대체분까지 포함한 103,757원이다.
단서(전환권대가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를 놓치면 ②로 오답. 전환권조정
미상각분(100,000-91,322=8,678원)을 빼지 않으면 ③(100,000원)이 나온다. 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 단서가 있으므로 91,321.5원 같은 단수 차이는 근삿값을 택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환사채 전환 문제는 '① 시장이자율로 전환일 부채 장부금액 BV1 구하기 → ② 문제가 묻는 대상 확인(총자본 순증가인가, 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 합인가) → ③ 전환권대가 대체 여부 반영' 순서로 판단한다. 단서에 '전환권대가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가 있으면 BV1에 전환권대가를 더한다. 자본금만 묻거나 주식발행초과금만 묻는 변형이면 발행 주식수(액면÷전환가격)와 주당 액면으로 자본금을 떼어내면 된다.

암기 포인트

전환 시 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 합 = 전환일 사채 장부금액 + 전환권대가. 부채 장부금액은 시장이자율로 굴린다: BV1 = BV0×(1+i) - 표시이자. 여기서는 87,565×1.10-5,000=91,322원,
91,322+12,435=103,757원. 함정 ②(91,322원)는 전환권대가 누락 버전이며 '총자본 순증가'만 물을 때의 값임을 기억할 것.

NoteBase

문 15. 단일 상품을 매매하는 (주)서울의 기말재고자산 평가와 관련된 자료는 <보기>와 같다.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가 ₩4,770,000일 때, 기말재고자산 단위당 순실현가치는? (단, 재고자산평가손실 전액과 재고자산감모분 중 50%는 정상적인 감모로 판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보기>

장부수량	실지재고수량	취득단가	기초상품재고액	당기매입액
3,000개	2,000개	₩100	₩500,000	₩4,500,000

① ₩70

② ₩80

③ ₩90

④ ₩95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매출원가 4,770,000원을 역으로 분해하여 기말재고자산의 단위당 순실현가치(NRV)를 구하는 문제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재고감모손실 중 비정상감모(50%)만 매출원가에서 제외된다. 둘째, 재고자산평가손실 전액과 정상감모(50%)는 매출원가에 포함된다. 셋째, 재무상태표상 기말재고자산은 실지재고수량 2,000개를 순실현가치로 평가한 금액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 장부수량 3,000개, 실지재고수량 2,000개, 취득단가 100원, 기초상품재고액 500,000원, 당기매입액 4,500,000원,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4,770,000원.
구할 값 — 기말재고자산의 단위당 순실현가치(NRV).
주의 조건 — 재고감모(장부 3,000개 − 실지 2,000개 = 1,000개) 중 50%만 정상감모로 보아 매출원가에 포함하고, 나머지 50%(비정상감모)는 매출원가에서 제외한다. 평가손실은 전액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사용할 공식

매출원가 = 판매가능재고액 - (실지수량 × NRV) - 비정상감모손실 여기서 판매가능재고액 = 기초재고 + 당기매입, 재무상태표상 기말재고자산 = 실지수량 × NRV이다. 판매가능재고액에서 출발하면 정상감모와 평가손실은 어차피 매출원가에 들어가므로 따로 뺄 필요가 없다. 매출원가에 들어가지 않는 항목은 오직 팔리지 않고 남은 재고(재무상태표상 기말재고)와 비정상감모손실 두 가지뿐이므로, 이 둘만 차감하면 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판매가능재고액 = 기초재고 + 당기매입 = 500,000 + 4,500,000 = 5,000,000원.
2. 총 재고감모 = (장부 3,000개 − 실지 2,000개) × 100원 = 1,000개 × 100원 = 100,000원.
3. 비정상감모손실(매출원가 제외분) = 감모손실의 50% = 50,000원.
4. 재무상태표상 기말재고자산 = 실지수량 2,000개 × NRV.
5. 매출원가 식에 대입: $4{,}770{,}000 = 5{,}000{,}000 - 2{,}000 \times \text{NRV} - 50{,}000$
6. 정리하면 $2{,}000 \times \text{NRV} = 5{,}000{,}000 - 50{,}000 - 4{,}770{,}000 = 180{,}000$.
7. $\text{NRV} = \frac{180{,}000}{2{,}000} = 90$ 따라서 단위당 순실현가치는 90원이다.

검산: 기말재고 = 2,000 × 90 = 180,000원, 평가손실 = 2,000 × (100 − 90) = 20,000원(전액 매출원가), 정상감모 = 50,000원(매출원가). 매출원가 = 판매분(5,000,000 − 3,000 × 100 = 4,700,000) + 정상감모 50,000 + 평가손실 20,000 = 4,770,000원으로 문제 수치와 일치한다.

선지 판단

① 70원 → X: NRV가 70이면 매출원가에서 제외되는 비정상감모가 5,000,000 − 2,000 × 70 − 4,770,000 = 90,000원이 되어, 감모 100,000원 중 90%를 비정상으로 본 셈이라 '50%만 비정상' 조건과 어긋난다. 틀린 처리(감모 대부분을 매출원가에서 제외) → 올바른 처리(감모의 50%인 50,000원만 제외).

② 80원 → X: NRV가 80이면 비정상감모가 5,000,000 − 2,000 × 80 − 4,770,000 = 70,000원이 되어 50% 기준과 맞지 않는다. 정상·비정상 감모 배분 비율을 잘못 잡으면 나오는 값이다.

③ 90원 → O: 비정상감모를 정확히 50,000원만 제외하고 실지수량 2,000개를 NRV로 평가하면 2,000 × NRV = 180,000, 즉 NRV = 90원이 되어 매출원가 4,770,000원과 정확히 일치한다.

④ 95원 → X: NRV가 95이면 비정상감모가 5,000,000 − 2,000 × 95 − 4,770,000 = 40,000원이 되어 50%(=50,000원) 조건과 어긋난다. 틀린 처리(비정상감모 과소 계상) → 올바른 처리(1,000개 × 100원 × 50% = 50,000원).

오답 포인트

감모수량 배분 오류 — 감모 1,000개 전부를 비정상으로 빼거나 반대로 전부 매출원가에 넣어 비정상감모를 0으로 두면 답이 틀어진다. 반드시 비정상 50% = 50,000원만 매출원가에서 제외한다.

기말재고 수량 혼동 — 재무상태표상 기말재고는 장부수량 3,000개가 아니라 실지재고수량 2,000개로 평가해야 한다. 3,000개로 잘못 계산하면 분모가 달라져 60원 같은 엉뚱한 값이 나온다.

평가손실 처리 — 평가손실은 전액 매출원가에 포함되므로, 매출원가에서 따로 빼야 할 항목은 평가손실이 아니라 비정상감모손실뿐임에 주의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 유형은 매출원가에서 제외되는 항목만 정확히 골라내는 것이 전부다. 순서는 첫째 판매가능재고액 = 기초 + 매입 계산, 둘째 매출원가에 안 들어가는 두 항목 즉 재무상태표상 기말재고(실지수량 × NRV)와 비정상감모손실만 차감, 셋째 식을 NRV에 대해 풀기다. 정상감모와 평가손실은 어차피 매출원가에 포함되므로 이 식에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기억하면 빠르게 풀린다.

암기 포인트

매출원가 = (기초 + 매입) − (실지수량 × NRV) − 비정상감모손실. 정상감모와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별도 차감 안 함), 비정상감모만 매출원가에서 제외(영업외비용·기타비용 처리). 기말재고 평가의 기준 수량은 항상 실지재고수량이다.

NoteBase

문 16. 20X1년도 영업을 시작한 (주)서울은 제품 1,000개를 생산하여 800개를 단위당 ₩1,000에 판매하였다. 관련 원가 자료가 <보기>와 같다면, 20X1년도 ㉠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과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의 차이와 ㉡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과 초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의 차이는?

<보기>

-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300
- 단위당 직접노무원가: ₩150
-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 ₩250
- 단위당 변동판매비와 관리비: ₩60
- 총고정제조간접원가: ₩80,000
- 총고정판매관리비: ₩45,000

① ㉠: ₩16,000, ㉡: ₩60,000

② ㉠: ₩16,000, ㉡: ₩80,000

③ ㉠: ₩25,000, ㉡: ₩60,000

④ ㉠: ₩25,000, ㉡: ₩80,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세 가지 원가계산방법(전부원가계산·변동원가계산·초변동원가계산)의 영업이익 차이가 '기말재고에 얼마만큼의 원가가 잠겨 있는가'로 결정된다는 원리를 이용해 ㉠과 ㉡을 구하는 문제이다. 영업을 시작한 첫 해이므로 기초재고는 0이고, 생산량(1,000개)과 판매량(800개)의 차이인 기말재고 200개가 핵심이다.

조건 정리

- 주어진 값: 생산 1,000개, 판매 800개, 기말재고 = 1,000 − 800 = 200개(첫 해라 기초재고 0)
-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직접재료비 ₩300, 직접노무비 ₩150, 변동제조간접비 ₩250
- 총고정제조간접비 ₩80,000, 총고정판매관리비 ₩45,000,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60
- 구해야 할 값: ㉠ = (전부원가 영업이익 − 변동원가 영업이익), ㉡ = (변동원가 영업이익 − 초변동원가 영업이익)
- 주의할 조건: 판매관리비(변동·고정)는 어느 방법에서도 모두 당기 비용이므로 재고에 잠기지 않아 영업이익 '차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차이는 오직 '재고에 묶이는 제조원가의 범위'에서 발생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각 방법이 제품원가(재고자산)로 보는 항목이 다르고, 차이는 기말재고에 잠긴 원가에서 나온다.
전부원가 이익 - 변동원가 이익 = 단위당 고정제조간접비 × 기말재고수량
변동원가 이익 - 초변동원가 이익 = (단위당 직접노무비 + 단위당 변동제조간접비) × 기말재고수량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전부원가계산은 고정제조간접비까지 제품원가에 넣어 재고로 이연하고, 변동원가계산은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변동제조간접비까지를 제품원가로 본다. 초변동원가계산은 오직 직접재료비만 제품원가로 보고 직접노무비·변동제조간접비·모든 고정비를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이익 차이는 '재고에 추가로 잠긴 원가 항목 × 재고수량'으로 정확히 설명된다.

계산 과정

1. 기말재고수량 = 생산 1,000개 − 판매 800개 = 200개
2. ㉠ 계산: 단위당 고정제조간접비 $= \frac{80,000}{1,000} =$ ₩80. 전부원가계산에서만 재고에 이연되는 금액 $= 80 \times 200 =$ ₩16,000. 즉 ㉠ = ₩16,000.
3. ㉡ 계산: 변동원가계산은 직접노무비·변동제조간접비를 재고에 넣지만 초변동원가계산은 이를 모두 당기 비용 처리한다. 단위당 (직접노무비 + 변동제조간접비) $= 150 + 250 =$ ₩400. 두 방법의 재고 차이 $= 400 \times 200 =$ ₩80,000. 즉 ㉡ = ₩80,000.
4. 따라서 ㉠ = ₩16,000, ㉡ = ₩80,000 → 정답은 2번.

선지 판단

① X — ㉠ ₩16,000은 맞지만 ㉡을 ₩60,000으로 본 것이 틀림. ₩60,000(틀린 표현)은 초변동원가계산이 '변동제조간접비만' 추가로 비용처리한다고 착각해 ₩250×200으로 ₩50,000을 구한 뒤 다른 변동비를 잘못 섞은 식의 오답 유도값이다. 초변동원가계산은 직접노무비까지 당기 비용으로 보므로 ㉡은 직접노무비와 변동제조간접비를 모두 더한 ₩400을 써서 ₩80,000(올바른 표현)이 되어야 한다.
② O — ㉠ = 단위당 고정제조간접비 ₩80 × 재고 200개 = ₩16,000, ㉡ = (직접노무비 ₩150 + 변동제조간접비 ₩250) × 재고 200개 = ₩80,000. 두 값 모두 일치하므로 정답.
③ X — ㉠을 ₩25,000으로 본 것이 틀림. ₩25,000은 단위당 변동제조간접비 ₩250에 ₩100을 곱하는 식의 오류이거나 분모를 판매량(800)으로 잘못 잡아 $\frac{80,000}{800} \times ?$ 식으로 헷갈린 값이다. ㉠은 반드시 '고정제조간접비 ÷ 생산량 × 기말재고'로 ₩16,000(올바른 표현)이어야 한다.
④ X — ㉠을 ₩25,000으로 본 것이 ③과 같은 이유로 틀림. ㉡ ₩80,000은 맞지만 ㉠이 틀려 오답이다. ㉠은 ₩16,000(올바른 표현)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 단위당 고정제조간접비를 구할 때 분모를 '판매량(800)'이 아니라 '생산량(1,000)'으로 나눠야 한다(생산된 제품에 배부하므로). 800으로 나누면 ₩100이 되어 ㉠이 틀어진다.
- ㉡에서 직접노무비를 빼먹고 변동제조간접비만 곱하는 실수(₩250×200=₩50,000) 또는 반대로 변동제조간접비를 빼먹는 실수 주의. 초변동원가계산에서 제품원가는 '직접재료비만'이므로 변동원가계산과의 차이는 '직접노무비+변동제조간접비' 전체다.
- 판매관리비(변동·고정)는 세 방법 모두 당기 비용이라 영업이익 차이에 끼어들지 않는다. ₩60, ₩45,000을 차이 계산에 넣으면 함정에 빠진다.
- 차이의 방향: 생산>판매(재고 증가)일 때 전부 ≥ 변동 ≥ 초변동 순으로 이익이 크다. 문제는 '차이(절댓값)'만 묻고 있어 부호는 중요하지 않지만 개념상 누가 더 큰지는 알아두자.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원가계산방법 간 이익 차이 문제는 '재고에 묶이는 원가 항목의 차이 × 기말재고수량' 한 줄로 정리한다. ① 전부 vs 변동 → 단위당 고정제조간접비 × 재고, ② 변동 vs 초변동 → (직접노무비+변동제조간접비) × 재고. 먼저 기말재고수량(생산−판매, 첫 해는 기초 0)을 구하고, 어떤 원가가 한쪽에만 재고로 잠기는지 표로 떠올린 뒤 곱하면 끝난다. 단위당 고정제조간접비의 분모는 항상 '생산량'이다.

암기 포인트

제품원가 범위: 초변동(직접재료비만) ⊂ 변동(+직접노무비+변동제조간접비) ⊂ 전부(+고정제조간접비). 이익 차이 = 한쪽에만 재고로 잠기는 원가 × 기말재고. ㉠ = 고정제조간접비생산량 × 기말재고, ㉡ = (직접노무비+변동제조간접비) × 기말재고

NoteBase

문 17.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보조금은 회계오류의 수정으로 회계처리한다.

② 자산관련보조금을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금액만큼 자산의 장부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이연수익에서 가산하여 기록한다.

③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의 관련원가 없이 기업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④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재무상태표에 이연수익으로 표시하거나 '기타수익'과 같은 일반계정으로 표시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의 네 가지 규정 — ①정부보조금 상환 시 처리방법(회계추정치의 변경), ②자산관련보조금 상환 시 회계처리, ③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한 보조금의 당기손익 인식, ④자산관련보조금의 재무상태표 표시방법 — 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상환=회계추정치의 변경/이연수익에서 차감', '즉각적 금융지원=권리 발생기간에 당기손익', '자산관련보조금=이연수익 또는 자산 차감(기타수익 표시 아님)'을 헷갈리지 않는 것이다.

핵심 개념

- 정부보조금: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과거나 미래에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대가로 정부가 기업에 자원을 이전하는 것 / 결정 차이축: 자산 취득과 관련되면 '자산관련보조금', 그 외에는 '수익관련보조금'
- 자산관련보조금: 비유동자산을 매입·건설·취득하는 것을 일차적 조건으로 하는 보조금 / 결정 차이축: 표시는 (가)이연수익 또는 (나)자산 장부금액 차감 두 가지만 허용
- 수익관련보조금: 자산관련보조금이 아닌 정부보조금 / 결정 차이축: 표시는 (가)별도수익 계정 또는 (나)관련비용 차감 — '기타수익 같은 일반계정 표시'는 이쪽 방법
- 정부보조금의 상환: 처음 인식한 보조금에 상환의무가 새로 생긴 것 / 결정 차이축: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처리하며, 자산관련은 장부금액 증가 또는 이연수익에서 '차감'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상환의무가 발생한 정부보조금은 기준서 제1020호 문단 32에 따라 '회계추정치(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며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틀린 표현 '회계오류의 수정으로 회계처리한다' → 올바른 표현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오류수정은 소급재작성 대상이라 처리방식 자체가 다르다.
② X — 자산관련보조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만큼 자산의 장부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이연수익(잔액)에서 '차감'하여 기록한다. 틀린 표현 '이연수익에서 가산하여' → 올바른 표현 '이연수익에서 차감하여'. 상환은 보조금 효과를 되돌리는 것이므로 이연수익은 줄어들어야(차감) 한다.
③ O —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의 보전 목적이거나, 향후 관련원가 없이 기업에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제공되는 정부보조금은 그 보조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문단 20~22). 대응시킬 미래원가가 없으므로 이연 없이 즉시 손익으로 잡는 것이 핵심.
④ X —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재무상태표에 '이연수익으로 표시'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여 표시'하는 두 방법만 허용된다(문단 24~27). 틀린 표현 '기타수익과 같은 일반계정으로 표시한다' → 올바른 표현 '자산의 장부금액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기타수익 등 일반계정 표시'는 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방법이지 자산관련보조금의 표시방법이 아니다.

오답 포인트

가장 잘 빠지는 함정은 ④이다. '이연수익으로 표시'라는 맞는 절반에 안심하다가 뒤의 '기타수익 같은 일반계정 표시'가 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방법임을 놓친다 — 자산관련보조금의 짝은 '자산 차감'이지 '기타수익'이 아니다. ②는 '장부금액을 증가시키거나'까지는 맞아 방심하기 쉬운데 마지막 '가산'을 '차감'으로 바꿔야 옳다(상환=효과 되돌리기=이연수익 감소). ①은 '회계추정치의 변경'을 '회계오류의 수정'으로 바꿔치기한 전형적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키워드로 끊어 본다. (1) '상환'이 보이면 → '회계추정치의 변경' + '이연수익에서 차감'(②①형 함정). (2) '즉각적인 금융지원/이미 발생한 비용·손실 보전'이 보이면 → '권리 발생기간에 당기손익 즉시 인식'(=정답 후보). (3) '자산관련보조금 표시'가 보이면 → 허용은 '이연수익 또는 자산 차감' 두 가지뿐, '기타수익/별도수익 일반계정 표시'가 붙으면 수익관련보조금과 바꿔치기한 오답이다.

암기 포인트

상환은 '추정변경·이연수익 차감', 즉각적 금융지원은 '권리 발생기간 당기손익', 자산관련보조금 표시는 '이연수익 OR 자산 차감'(기타수익은 수익관련 몫).

NoteBase

문 18. 환율변동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한다.

② 기능통화에 의한 외화거래 보고 시,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③ 기능통화에 의한 외화거래 보고 시, 매 보고기간 말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한다.

④ 기능통화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능통화에 의한 환산절차를 변경한 날부터 전진적용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K-IFRS 제1021호(환율변동효과)에서 '보고기간 말 외화항목을 어떤 환율로 환산하는가'를 항목 종류별로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다. 핵심 갈림길은 두 갈래다. 첫째 화폐성이냐 비화폐성이냐, 둘째 비화폐성이라면 역사적원가로 측정했느냐 공정가치로 측정했느냐다.

핵심 개념

기능통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회사가 실제로 돈을 버는 통화). 외화는 기능통화 이외의 통화다.
화폐성 항목: 확정되었거나 확정 가능한 화폐 단위 수량으로 받거나 지급하는 자산·부채(매출채권, 매입채무, 대여금, 차입금 등). 판단 기준은 '받을·줄 금액이 화폐액으로 고정되는가'다.
비화폐성 항목: 화폐 단위 수량으로 고정되지 않은 자산·부채(재고자산, 유형자산, 선급금, 무형자산 등).
보고기간 말 적용 환율 정리(평문): 화폐성 항목=마감환율 / 비화폐성·역사적원가 측정=거래일(취득일) 환율 / 비화폐성·공정가치 측정=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

선지별 해설

① O —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거래일의 외화금액에 거래일의 기능통화와 외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한다(최초 인식 원칙). 발문 그대로 옳다.
② X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 → 마감환율로 환산'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마감환율은 화폐성 항목에 적용하는 환율이다. 틀린 표현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 올바른 표현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한다'. 가장 옳지 않은 선지이므로 정답이다.
③ O —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에도 재환산하지 않고 거래일(취득일)의 환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옳다.
④ O — 기능통화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새로운 기능통화에 의한 환산절차를 전진적용한다(과거로 소급하지 않는다). 옳다.

오답 포인트

'마감환율'이라는 단어에 속지 말 것. 마감환율은 오직 화폐성 항목에만 적용한다. 비화폐성 항목은 측정기준을 먼저 본다 → 역사적원가면 거래일 환율(재환산 안 함), 공정가치면 공정가치 결정일 환율이다. ②는 비화폐성·공정가치 항목에 화폐성 항목용 환율(마감환율)을 갖다 붙여 만든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고기간 말 환산 환율을 묻는 선지가 나오면 2단계로 끊어 판단한다. 첫째, 화폐성인가? 그렇다면 무조건 마감환율. 둘째, 비화폐성인가? 측정기준을 확인해서 역사적원가는 거래일 환율, 공정가치는 공정가치 결정일 환율. 선지에 비화폐성 항목인데 '마감환율'이라는 말이 보이면 거의 틀린 선지다.

암기 포인트

화폐성=마감환율 / 비화폐성·원가=거래일환율 / 비화폐성·공정가치=공정가치결정일환율 / 최초 인식=거래일 현물환율 / 기능통화 변경=변경일부터 전진적용.

NoteBase

문 19. (주)서울은 단일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표준원가 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표준원가 및 생산활동 자료가 <보기>와 같다면, 직접재료원가 실제발생원가는? (단, 직접재료와 재공품, 제품의 기초 및 기말재고는 없다고 가정한다.)

<보기>
- 제품 실제생산량: 1,000개
- 직접재료 표준가격: ₩40/kg
- 직접재료 표준사용량: 2.5kg/제품1개
- 직접재료원가 수량차이: ₩40,000(불리)
- 직접재료원가 가격차이: ₩15,000(유리)

① ₩75,000

② ₩90,000

③ ₩105,000

④ ₩125,0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표준원가계산에서 직접재료원가의 가격차이와 수량차이(능률차이)를 거꾸로 이용해, 실제 발생한 직접재료원가(실제수량×실제가격)를 구하는 문제다. 표준원가에서 출발해 불리한 차이는 더하고 유리한 차이는 빼면 실제원가가 된다는 관계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실제 생산량 1,000개 / 직접재료 표준가격(SP) 40원/kg / 단위당 표준사용량 2.5 kg/개 / 수량차이 40,000원(불리) / 가격차이 15,000원(유리).
구해야 할 값: 직접재료원가 실제 발생액 = 실제수량(AQ) × 실제가격(AP).
주의: 재료·재공품·제품의 기초·기말재고가 모두 없으므로 구입량=사용량이며, 가격차이와 수량차이는 같은 실제사용량(AQ) 기준으로 산출된다. 불리(U)는 원가 증가(+), 유리(F)는 원가 감소(−)로 부호를 구분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표준허용수량 SQ = 실제생산량 × 단위당 표준사용량
표준허용원가 $= SQ \times SP$
수량차이 $= (AQ - SQ) \times SP$, 가격차이 $= (AP - SP) \times AQ$
핵심 관계: 실제원가 = (SQ × SP) + 불리차이 - 유리차이.
총차이(실제원가 − 표준허용원가)는 가격차이와 수량차이의 합이므로, 표준원가에 두 차이를 부호에 맞게 가감하면 실제원가가 바로 나온다. 불리는 돈을 더 쓴 것이라 더하고, 유리는 덜 쓴 것이라 뺀다.

계산 과정

1) 표준허용수량 SQ = 1,000개 × 2.5 kg = 2,500 kg
2) 표준허용원가 = 2,500 kg × 40원 = 100,000원
3) 실제원가 = 표준원가 + 수량차이(불리) − 가격차이(유리) = 100,000 + 40,000 − 15,000 = 125,000원
[검산] 실제사용량으로 직접 확인해도 같다. 수량차이 $(AQ - 2{,}500) \times 40 = 40{,}000$ 이므로 AQ = 3,500 kg. 이때 실제수량의 표준원가는 3,500 × 40 = 140,000원이고, 가격차이가 유리 15,000원이므로 실제원가 = 140,000 − 15,000 = 125,000원으로 일치한다.

선지 판단

① 75,000원 → X: 100,000에서 불리·유리 부호를 반대로 적용한 값(100,000−40,000+15,000=75,000)이다. 불리차이는 더해야 한다.
② 90,000원 → X: 두 차이를 모두 빼거나 임의로 조합한 값으로 근거가 없다. 불리 40,000을 빼면 안 된다.
③ 105,000원 → X: 유리차이 15,000을 빼지 않고 더하거나 한쪽 차이만 반영한 값이다. 유리차이는 원가를 줄이므로 빼야 한다.
④ 125,000원 → O: 표준허용원가 100,000 + 수량차이(불리) 40,000 − 가격차이(유리) 15,000 = 125,000원이며, 실제사용량 3,500 kg 기준 검산과도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부호 혼동이 최대 함정이다. 불리(U)=원가 증가(+), 유리(F)=원가 감소(−)를 반대로 적용하면 ①75,000원이 나온다. '불리는 더하고 유리는 뺀다'를 고정한다. 또 표준허용수량을 실제생산량 1,000개로 착각하거나 2.5 kg를 곱하지 않으면 표준원가 100,000원을 못 구한다. 기초·기말재고가 없다는 단서는 구입량=사용량이라 구입가격차이와 사용가격차이가 같아진다는 의미이므로, 이를 빌미로 가격차이를 두 번 쓰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실제발생원가를 구하라는 차이분석 문제는 (1) 표준허용수량 SQ = 실제생산량 × 단위당 표준량 → (2) 표준허용원가 SQ × SP → (3) 실제원가 = 표준원가 ± 차이 순서로 푼다. 핵심은 부호로, 불리(U)는 +, 유리(F)는 − 로 표준허용원가에 가감하면 실제원가가 나온다. 굳이 AQ나 AP를 따로 구하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표준원가를 구하라'면 실제원가에서 불리는 빼고 유리는 더해 거꾸로 가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실제원가 = (SQ× SP) + 불리차이 - 유리차이. 불리(U)=가산(+), 유리(F)=차감(−). 표준허용원가 = 실제생산량 × 단위당 표준사용량 × 표준가격. 이 문항: 100,000 + 40,000 − 15,000 = 125,000원.

NoteBase

문 20. (주)서울은 <보기>와 같이 20X1년 1월 초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액면발행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신주인수권대가는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주식으로 발행될 때 행사된 부분만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한다.)

<보기>
• 액면금액 ₩2,000,000, 만기 3년, 액면이자 매년 말 지급, 표시이자율 연 5%
• 일반사채 시장수익률은 연 10%이며, 표시이자율 5%, 만기 3년, 액면금액 ₩2,000,000, 매년 말 액면이자 지급 조건, 일반사채의 20X1년 초 현재가치는 ₩1,750,000
• 20X2년 초 사채 액면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 행사
• 행사가액 ₩20,000이며, 발행주식 액면금액 ₩1,000

① 20X1년 말 신주인수권조정 잔액은 ₩175,000이다.
②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까지 인식할 총 이자비용은 ₩550,000이다.
③ 20X2년 초 신주인수권 행사 결과 증가하는 주식발행초과금은 ₩950,000이다.
④ 20X2년 말 신주인수권대가 잔액은 ₩125,000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했을 때 부채요소(일반사채)와 자본요소(신주인수권대가)를 분리하고, 유효이자율법으로 신주인수권조정을 상각하며, 신주인수권 행사 시 늘어나는 주식발행초과금을 구하는 문제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를 그대로 보유한 채 신주를 인수할 권리(워런트)가 붙은 사채'이고, 신주인수권대가는 그 권리의 가치(자본 항목), 신주인수권조정은 사채 액면과 일반사채 현재가치의 차이를 부채에서 차감하는 조정항목이다. 전환사채와 달리 권리를 행사해도 사채(원금)는 그대로 남아 만기에 액면상환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조건 정리

액면금액 2,000,000원, 만기 3년, 표시이자율 5%(액면이자 매년 말 100,000원), 액면발행이므로 발행가액은 2,000,000원. 일반사채 시장수익률(유효이자율) 10%, 동일 조건 일반사채의 20X1년 초 현재가치는 1,750,000원. 20X2년 초에 사채 액면금액의 50%(=1,000,000원)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 행사. 주당 행사가액 20,000원, 발행주식 액면금액 1,000원. 발문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틀린 선지 1개가 정답이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신주인수권대가 = 발행가액 − 일반사채 현재가치. 신주인수권조정(초기) = 사채 액면금액 − 일반사채 현재가치. 유효이자(이자비용) = 기초 부채 장부금액 × 유효이자율. 행사 시 주식발행초과금 증가 = (납입현금 + 대체되는 신주인수권대가) − 자본금(액면총액). 액면발행이지만 사채의 부채요소는 1,750,000원뿐이므로 차액 250,000원이 권리의 대가(자본)이자 부채를 액면보다 낮게 인식하는 차감 조정(신주인수권조정)이 되고, 이 조정액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되어 이자비용으로 흘러간다.

계산 과정

1) 신주인수권대가 = 신주인수권조정(초기) = 2,000,000 − 1,750,000 = 250,000원. 2) 20X1년 이자비용 = 1,750,000 × 10% = 175,000원, 표시이자 100,000원을 빼면 당기 상각액 = 75,000원. 3) 20X1년 말 신주인수권조정 잔액 = 250,000 − 75,000 = 175,000원(①과 일치). 4) 만기까지 총이자비용 = 총 표시이자(100,000 × 3 = 300,000) + 총 상각액(신주인수권조정 전액 250,000) = 550,000원(②와 일치). 5) 20X2년 초 50% 행사: 발행주식수 = 1,000,000 ÷ 20,000 = 50주, 납입현금 = 50 × 20,000 = 1,000,000원, 자본금(액면총액) = 50 × 1,000 = 50,000원, 대체되는 신주인수권대가 = 250,000 × 50% = 125,000원. 6) 증가하는 주식발행초과금 = (1,000,000 + 125,000) − 50,000 = 1,075,000원(③의 950,000원과 불일치 → ③이 틀림). 7) 20X2년 말 신주인수권대가 잔액 = 미행사분 50% = 250,000 × 50% = 125,000원(④와 일치).

선지 판단

① O — 20X1년 말 신주인수권조정 잔액은 175,000원이다. 초기 조정 250,000원에서 20X1년 상각액 75,000원(유효이자 175,000 − 표시이자 100,000)을 차감하면 175,000원으로 보기와 같다.
② O — 만기까지 인식할 총이자비용은 550,000원이다. 총 표시이자 300,000원에 신주인수권조정 총상각액 250,000원을 더한 값으로, 사채는 행사돼도 만기 액면상환되므로 총이자비용은 행사와 무관하게 550,000원이다.
③ X — '증가하는 주식발행초과금 950,000원' → 올바른 값은 1,075,000원. 납입현금 1,000,000원과 대체되는 신주인수권대가 125,000원을 합한 1,125,000원에서 자본금 50,000원을 빼야 한다. 950,000원은 신주인수권대가 대체액 125,000원을 빠뜨렸을 때(현금 1,000,000 − 자본금 50,000) 나오는 오답이다. 따라서 '가장 옳지 않은' 선지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
④ O — 20X2년 말 신주인수권대가 잔액은 125,000원이다. 전체 250,000원 중 50%만 행사되어 그 절반 125,000원이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되고, 미행사분 50%인 125,000원이 자본에 그대로 남는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에서 주식발행초과금을 구할 때 '대체되는 신주인수권대가'를 빠뜨리는 실수가 가장 흔하다. 단서에 '행사된 부분만큼 신주인수권대가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한다'고 명시했으므로 125,000원을 반드시 더해 1,075,000원으로 계산해야 한다. 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전환사채로 착각하면 안 된다. 전환사채는 행사 시 사채가 소멸하지만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가 그대로 남아 만기에 액면상환되므로 부채 장부금액을 자본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발행주식수는 '행사된 사채 액면금액 ÷ 주당 행사가액'(1,000,000 ÷ 20,000 = 50주)으로 구하며, 행사가액 20,000원과 주식 액면 1,000원을 혼동하지 말 것.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신주인수권부사채 문제는 '부채요소·자본요소 분리 → 신주인수권조정 유효이자율 상각 → 행사 시 회계처리' 순서로 푼다. 행사 회계처리는 [차변] 현금(행사금액) + 신주인수권대가(행사비율분), [대변] 자본금(액면총액) + 주식발행초과금(대차차액)으로 분개를 직접 써보면 주식발행초과금이 정확히 나온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①②④가 모두 맞으면 남는 ③이 정답임을 교차검증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신주인수권대가 = 발행가액 − 일반사채 현재가치. 행사 시 주식발행초과금 = (납입현금 + 대체 신주인수권대가) − 자본금(액면총액).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행사해도 사채는 존속(만기 액면상환), 총이자비용 = 총 표시이자 + 신주인수권조정 전액.

NoteBase